





2015

# 제주문화예술정책연구

제14집

Review of Jeju Culture & Art Policy





# ▶▶▶ 발간사 ◀◀◀

정부의 문화정책 핵심이 지역문화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시행되면서 지역문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새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지역 스스로가 주체로 나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환경의 변화는 지역, 특히 제주에게 기회입니다. 제주도정은 ‘문화예술의 섬, 제주’를 비전으로 세우고, 3% 문화예산시대를 약속하며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진흥의 시대를 맞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 속에서 제주의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을 잘 수립하고 실행에 옮긴다면 제주 문화예술이 꽂피는 미래가 머지않아 실현될 것입니다.

이에 제주문화예술재단은 현 정부 문화정책의 주요 핵심인 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에 무엇을 담을지 고민하고 성찰하며 『제주문화예술정책연구』 제14집을 발간합니다. 본고는 제주의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다양한 각도의 글을싣고자 했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이 담고 있는 중요 이슈와 지역문화 정책 수립에 있어 유용한 조언을 비롯하여 제주의 지역여건에 맞는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 본격적인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정부가 제시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되짚어보며 제주 지역문화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문화예술정책연구』 제14집이 앞으로 제주의 문화융성을 위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소망합니다. 집필을 기꺼이 승낙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12월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현승환



# Content 차례

## 논단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계획, 무엇을 담을 것인가?

#### 09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에 따른

지역문화 정책계획에 대한 소고

**조광호**(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 19 • “민관 협력으로 지역문화 방향 수립...계획 실천은 숙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전북의 사례

**장세길**(전북연구원 문화관광연구부 부연구위원)

#### 35 • 제주의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제언

**박경훈**(제주민예총 이사장)

#### 57 • 지역문화시행계획에 따른 시도문화재단의 역할

**조정윤**(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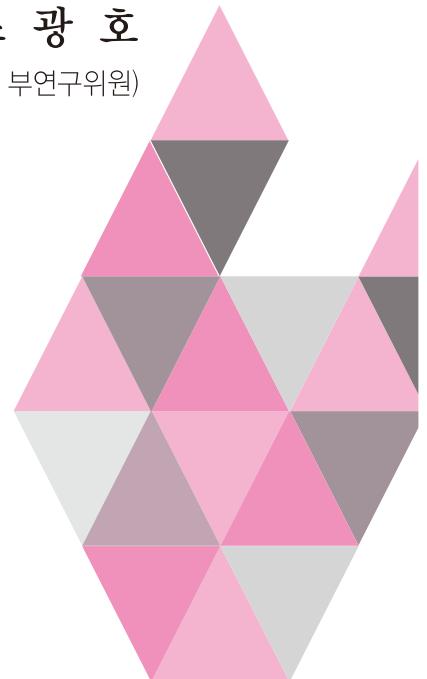
#### 73 • 참고자료

- 지역문화진흥법
-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2020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에 따른 지역문화 정책계획에 대한 소고**

조 광 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에 따른 지역문화 정책계획에 대한 소고<sup>1)</sup>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조 광 호

### • 들어가는 말

2015년 지역문화진흥법의 본격 시행과 함께 각 지역에서는 지역문화 정책계획과 사업의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던 한 해였다. 필자는 본고를 통해 지난간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지역문화정책 화두의 변화를 되짚어보고, 이를 통해 지역문화진흥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새로운 지역문화정책 방향을 선도하고 있는 근저의 움직임과 변화의 동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 2014년, 지역문화융성을 위한 법적 ·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다.

필자는 현재의 지역문화정책 및 사업에 있어 새로운 화두와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지난 2014년을 다시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014년은 문화에 대한 법제도적 변화가 매우 많았던 해로서 기억하고 있다. 가장 먼저 국민

1) 본 원고는 필자가 ‘공공정책’의 칼럼(2015)에서 밝힌 논고를 바탕으로, 2015년 10월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주최 한 ‘2015 제주문화예술정책포럼’에서의 발제 내용을 포함하여 발췌 및 재구성한 것임을 밝힘

---

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문화권을 보장하는 문화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를 필두로 문화예술의 근본 바탕이 되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새롭게 개정되었다. 또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문화의 의미를 더욱 깊고 넓게 만들어 주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역문화진흥법이 2014년 1월 28일 제정되고 동년 7월 28일 시행되었는데 이로써 우리나라에서 지역문화의 근본 바탕이 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지역문화 정책 및 사업과 각종 문화적 활동의 기본적인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렇듯 2014년은 문화에 대한 법제도적 변화를 통해 국민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문화융성의 기본 틀이 마련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문화적 정책을 변화를 크게 이해하고 각종 정책 및 사업과 활동 모두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2015년, 지역문화진흥법 본격 시행으로 지역문화의 중요한 화두와 이슈를 생성하다.

지역문화에 있어 2015년은 지역문화진흥법 본격 시행의 원년이 된 해로서 법의 본격적인 시행과 함께 지역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과 사업이 새롭게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2015년은 특히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화두와 중요이슈가 표출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 및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에 따른 지역문화 정책계획에 대한 소고 ●

중요화두	이 슈
지역문화진흥계획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기본-시행- 세부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에서 제시하는 중요 화두와 이슈를 담아 구성되는 총체적 계획으로 지역 스스로 문화정책을 만들어가는 문화자치의 시작점</li> <li>향후 각 지역에서 시행되는 지역문화정책의 기본적인 정책틀이자 법적 의무계획으로 지역활성화 및 지원의 정책근거가 됨</li> <li>기본계획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시행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에서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는 지역 중심의 구조로 구성</li> <li>지역에서 원하는 정책 및 계획을 중심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각각의 지역계획과 연동 필요(지역발전계획 / 문화예술계획 등)</li> </ul>
생활문화의 지원 및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 개개인이 문화적 삶의 가치를 알고 일상에서 스스로 문화를 실현해 나가는데 대한 지원 및 활성화를 법적으로 명시</li> <li>생활문화시설이 새로운 법적 문화시설의 유형으로 명시되면서 관련 시설 설치 및 지원에 대한 근거 및 기본 토대를 마련</li> </ul>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문화의 핵심주체이자 리더로서 전문인력의 가치와 중요성이 법적으로 제시되고 이에 대한 지원근거가 법적으로 명시</li> <li>지역기반의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체계를 갖추고 이를 창조인력 중심의 문화융성 및 창조경제로 연결하는 정책구상 필요</li> </ul>
지역문화실태조사의 시행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에서 문화정책 수립 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조사</li> <li>지역 문화자원(휴먼/소프트/하드웨어)에 대한 총체적인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는 지역조사가 되어야 실제적 실효성 발생</li> </ul>
문화도시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및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 지역에서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원하는 문화도시의상을 직접 선택하고 지정받는 지역 중심의 도시지정 제도</li> <li>현재 각 지역에서 추진 중인 문화도시 정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지역 문화융성이 실현되는 핵심요체이자 문화적 정체성의 미디어가 되는 가능성을 가짐</li> <li>새로운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이해와 주목 필요(지역의 문화적 시민운동의 개념이자 지역기반의 문화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는 도시문화활성화사업으로 추진 중 -지역문화특화지역 사업)</li> </ul>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문화기관 및 단체로서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명시</li> <li>지역에서 재단 및 위원회에 대한 지역에서의 위상 및 역할, 업무에 대한 정립 필요하며 특히, 기존 지역문화기관 및 단체(문화원, 문화의 집 등)와 상호적 관계설정 및 조율 필요</li> </ul>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문화 정책 거버넌스를 구성 실현하는 중요요체</li> <li>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광역-기초), 전문가가 함께 지역문화 정책을 협의하는 협치의 구조</li> </ul>

---

- 향후 지역문화 정책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제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5년 지역문화진흥법의 본격 시행으로 많은 정책적 화두와 이슈들이 생성되며 그에 따른 지역문화의 새로운 움직임과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중요한 현재의 시점에서 필자는 지역문화의 패러다임 변화에 주목하여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지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 첫째,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속적으로 만들어가야 할 법이다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및 시행 이후 지금 지역에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는 오랜 시간의 기다림과 염원 끝에 만들어진 법이기에 갖고 있는 가능성과 한계에서 비롯되는 양면성이 반영된 결과라 이해된다.

단, 지금 우리가 직시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법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아니라 지역문화진흥법이 2014년 비로소 제정된 최초의 제정법이라는 사실이다. 향후 올바른 개정작업을 통해 법을 내실 있고 실제적인 효과를 생성하는 법으로 다져가는 작업이 연속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 우리는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을 법적 결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법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의 시작점으로 보는 시각을 가져야 할 것이며, 개정작업에 있어서는 지역의 문화적 진흥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문화적 과정을 담아가는 법을 지향하고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 둘째, 법에 따른 지역의 책무에 대해 알아두어야 한다

지역문화진흥법에서 국가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의 지휘자 역할을 하며 지역문화 정책 및 사업의 직접적인 실현주체이자 실제적인 연주자로서의 역할은 지역이 직접적으로 부여 받는 구조이다.

실제적으로 지역문화진흥법 24개 조항 중 지역의 책무로 정하는 사항은 14개로 매우 많은 정책적 책무를 지정하고 있으며 지역의 책무는 정책결정권자로서의 책무, 사업추진 및 관리주체로서의 책무, 사업지원자로서의 책무로 그 역할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있는바 이로써 지역 중심의 문화자치가 시작되며 지역 기반의 실제적인 문화력이 높아지고, 깊어질 수 있음을 지역 스스로가 인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현장에서는 이러한 지역문화정책의 주체변화와 함께 지역이 문화정책의 중요한 위치에 서있음을 인지하고 중앙정부와 함께 정책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면서 지역문화진흥

을 위한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광역지자체는 정책결정 및 예산회계적 측면에서 볼 때 중앙정부와 기초지자체 사이에서 정책협력의 구심점이 되는 정책전달체계의 마스터키를 쥐고 있으므로 협치의 중앙에서 새로운 지역문화의 변화된 바람을 이끌어가는 큰 역할 맡아 그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 셋째, 지역문화진흥의 새로운 방법론 – 지역가치의 재생 및 재창조

새로운 지역문화 정책에 있어 지역문화의 진흥은 지역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새롭게 지역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문화적 패러다임에 의해서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이 현재 가진 가치와 자산에 대한 문화적 재발견과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며 그 결과를 미래가치로 전환하고 활용하는 지역가치의 재생 및 재창조의 방법이 요구된다.

2015년에는 법의 본격적인 시행과 함께 이러한 지역가치 재생 및 재창조의 방법론이 실제 지역에서 장소성 – 시간성 – 사회성을 새롭게 발현하는 방법으로 펼쳐지게 될 것이라 사료된다.

먼저 장소성의 발현은 지역의 유휴공간에 대한 문화적 활용과 원도심의 문화적 재생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는 문화장소를 만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자 창조적 시도로 지역에서 지금까지 버려지고 방치되었던 빈공간이 문화적인 사람의 창조적 시도와 활동으로 재활성화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지역문화의 장소플랫폼으로 재창조되고 있다.

이러한 장소기반의 문화적 공간재생에 대한 시도는 도시적으로 확장되면서 침체된 원도심(또는 구도심)의 문화적 재생을 위한 방법론이 되며 문화적 가치를 아는 사람과 그들의 활동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는 매우 유효한 방법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 예상된다.

문체부의 예술로공간재창조사업(산업시설 재생) 및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이 이러한 지역의 유휴공간을 문화적으로 재생하는 사업이며 현재 새로운 개념으로 도시문화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문화도시사업이 도시적 문화재생 및 확장의 대표적인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시간성의 발현은 지역이 가진 과거의 가치와 현재 지역민의 삶의 가치가 만나 동시대적으로 살아나고 이를 통해 지역의 미래가지를 만들어 가는 동시대적 문화콘텐츠 활용전략으로부터 나타나게 될 것이다. 특히 지역의 역사와 문화는 단지 시간 속에 잠재된 박물의 형태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위해 기능하는 살아있는 지속가능의 콘텐츠로서 활용하는 동시대적 접근 방법이 계속적으로 시도될 것이라 사료된다.

사회성의 발현은 지역문화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지역의 인적자원에 대한 가치인식 변화

---

와 재창조로부터 시작되며 문화적 의지를 가진 사람들의 발견과 그들의 만남을 통한 새로운 지역문화의 창발성을 발현하는 것이 지역문화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문화를 잘 알고 있으면서 이를 심연으로부터 고민하는 안목과 문화적 행동으로 실현하는 실행력을 동시에 갖춘 지역문화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발견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며, 이들 전문인력 상호간의 협력적 유대관계를 통해 구성되는 지역문화의 인적네트워크 형성은 지역활성화의 매우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으로 문화 의지를 발현함에 있어 생활문화는 매우 중요한 한 역할을 할 것인데 문화적 의지를 가진 개인의 일상으로부터 시작되는 생활문화는 결국 사회적 구도에서의 지역 문화리더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공동체로 발전할 것이라 생각된다.

단,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지역가치의 재창조를 위한 시작은 지역이 원래 가지고 있던 내재적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새로운 받아들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의 지역 가치와 자산 상호 간의 융합이 중요한 관건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지역문화자원에 대한 조사가 세부적이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넷째, 지역문화 융합정책의 본격 발현과 효과 생성의 핵심이 지역으로 중심이동하고 있다

지금의 시대는 문화는 단어의 앞과 뒤에 문화를 붙이면 모든 것이 문화가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지평이 넓어지고 다양해졌으며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개념이 되고 있다.

문화융성의 국정기조 안에서 특히 이는 문화기반의 융합정책을 이끌어내는 바탕이 되는 개념이며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로 옷입히기’ 정책은 이러한 융합적 정책개념의 시도이자 결과가 되고 있다.

‘문화로 옷입히기’를 통한 문화융합의 정책은 이제 대세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다. 문체부와 농림부가 손을 잡아 만들어진 문화이모작 사업은 현재 지역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토부가 손을 잡아 만들어진 정책융합형의 문화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이제 시작되고 있으며 문체부와 산자부가 협력하여 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만큼 문화기반의 융합정책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지역은 문화정책이 펼쳐지고 다시 모이는 총합의 결과지점이다. 기본적으로 지역문화진흥법의 본격 시행에 따른 결과로서 생활문화도, 문화도시도, 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및 문화지원 등도 결국에는 지역에서 모이고 펼쳐지게 될 것이며 또한 문화기반 융합정책의 효과도 모두 지역에서 발현된다. 문화이모작사업도, 문화적 도시재생사업도, 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도 모두 그 결과는 지역에서 발현된다는 것이다.

이렇듯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융합적 정책의 흐름은 정책의 간류에서 국가정책의 큰 강으로 모이고 있으며 지역은 큰 강의 흐름을 담는 그릇이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융성을 위한 지역의 문화기반 융합정책은 2016년에도 계속 유효하며 중요한 기제라 할 수 있다.

### 부언 : 문화융성을 위해서는 지역문화를 위한 예산구조 개편과 신설이 절실하다

지역문화융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문화를 위한 예산구조 개편과 신설이 절실하다. 현재의 지역예산 지원시스템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 상의 포괄보조금 방식은 의도와 목적은 지역자치를 위해 매우 가치 있고 유용하나 지역문화에 있어 그 실질적인 실현에는 별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문화부에서는 현재 지역계정으로 많은 사업과 예산을 배정 및 전환하고 있으나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따른 포괄보조금에 있어 문화계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제대로 특화 되어있지 않다. 그래서 언제나 정치적 문제와 필요불가결의 정책논리에 덮이고 밀려 다른 지역계정의 예산으로 흡수되거나 사라져버리기 일수인 것이 지금 지역의 현실이다.

지금 현재 정부의 중요한 정책기조 중 하나가 문화융성이며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융합정책이 매우 유효한 방법론임에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상에서 지역문화를 위해 특화된 문화계정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상황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에서 문화융성이 실제로 실현되려면 지특회계상에서 사회문화발전 전용의 예산계정이 신설되어야 하며 이는 2015년 새해 정부가 도입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자 지역문화 정책의 중요 화두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특히, 지역문화의 진흥 및 창조인력을 통한 지역활성화와 경제 효과 창출 모두 결국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지역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양성 및 지원을 위해 예산을 쓸 수 있는 예산구조 마련이 필요하다.

### • 나오는 말

지금까지 필자는 2015년 지역문화진흥법의 본격 시행과 이를 통한 정책환경 변화 측면에서 짚어보았으며 이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지난 2014년과 2015년 변화된 지역문화정책의 판도를 분명히 읽고 그 다음을 준비 해야 한다.

둘째, 향후 지역문화진흥법과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요 정책의제가

---

지역문화를 점차 변화시켜 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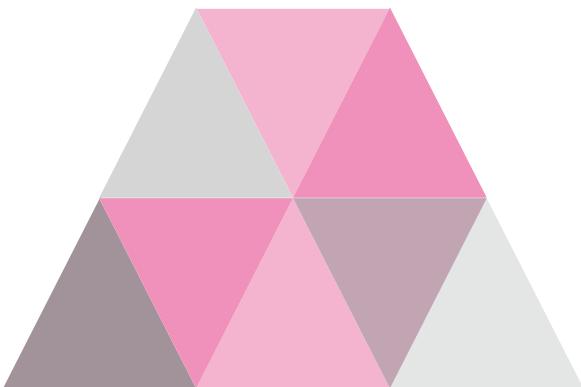
셋째,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가치 재생 및 재창조 방법론은 창조적 지역발전의 주요한 전략이자 핵심 키워드가 된다.

넷째, 문화융성을 위한 정책사업의 생성 및 효과발현의 지점이 점차 지역으로 중심이동하고 있음을 견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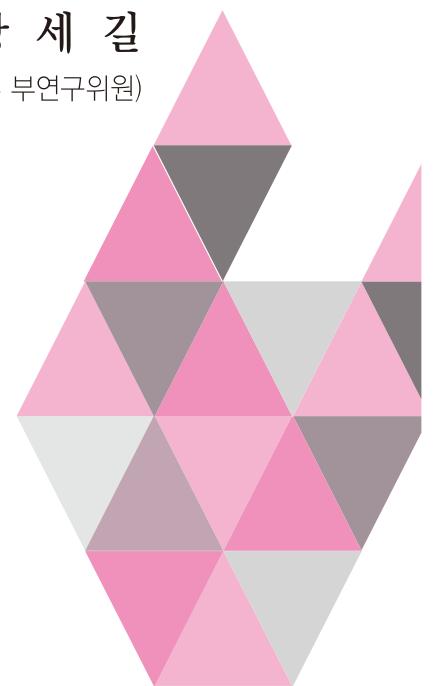
자고로 강이 깊고 넓음은 강을 만드는 지류와 간류로부터 알게 되며 언젠가 모여 흐르는 강을 봄으로써 비로소 그 모습을 헤아리게 되는 법이다. 강의 모습만을 보고 그때서야 다시 강이 되기에는 그 흐름은 너무나도 커서 뒤엉키기 어렵다.

지역문화도 이와 같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지역문화 각 영역에서는 지역문화의 큰 흐름이 변화하는 지금의 때를 예의주시하고 그 변화에 함께 동참해야 할 것이며, 그 중심에서 지금 지역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자문해보면서 지역문화의 기틀부터 다시 한번 찾아보고 논의하여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민**관 협력으로 지역문화  
방향 수립...계획 실천은 숙제”



장 세 길  
(전북연구원 문화관광연구부 부연구위원)







## 민관 협력으로 지역문화 방향 수립…계획 실천은 숙제

### –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사례 –

전북연구원 문화관광연구부 부연구위원 장 세 길

#### 1. 시행계획의 수립과정

##### 1) 계획 수립의 체계

‘전라북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은 전라북도 출연연구기관인 (재)전북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전라북도(문화예술과)로부터 연구용역(2014.11. 20~2015.2.27)을 의뢰받아 마련한 계획안을 토대로 전라북도가 수립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 10월에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안을 시·도에 전달하면서 시행계획을 2015년 3월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전라북도는 용역비를 긴급하게 확보해 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했다.

연구원이 연구를 총괄하여 계획안을 마련했으나, 전라북도 문화예술과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주요내용을 수립했다. 최초로 수립되는 지역문화 법정계획이라는 상징성도 있거니와,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자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기 때문이다. 물론 연구진이 마련한 시행계획안은 현장 전문가, 지역문화 관계자 등이 참여한 전문가그룹에서 검토되었고,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반영됐다. 또한 전라북도 문화예술과는 14개 시·군 담당부서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전라북도와 시·군 시행계획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구 분	업무내용
전라북도- 전북연구원 연구수행 업무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라북도 과업 담당자 및 공동 연구진 참여</li> <li>• 과업수행 위한 업무협의 및 발굴사업 조정</li> </ul>
전북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수립 배경 및 정책환경 분석</li> <li>• 전라북도 여건분석</li> <li>• 지역문화진흥 비전과 목표, 전략과제 설정</li> <li>• 사업 발굴 및 계획 수립</li> </ul>
전문가 자문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문화진흥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자문</li> <li>• 추진과제별 발굴 및 발굴사업안 자문</li> <li>• 사업별 사례 제시 및 세부 실천계획 자문</li> </ul>
시·군 관계자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도 지역문화진흥계획의 방향 논의</li> <li>• 시군별 지역문화진흥계획 및 사업안 수립</li> </ul>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굴된 사업안별 시행가능성 분석</li> <li>• 여건에 맞는 사업안 조정 및 추가사업 제안</li> </ul>

〈표1〉 계획 수립 업무 분담 체계



〈그림1〉 연구 수행과정 및 내용

## 2) 계획수립의 방법 : Top-Down? Bottom-Up?

지역문화진흥계획 세미나 또는 시도 관계자 회의에서 주요하게 논의된 내용 중 하나가 지역문화진흥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계획 수립 방식 그대로 문화체육관광부가 기본계획을 Top-Down 방식으로 시도에 ‘하달’한다는 것이다. 원칙적인 입장에서 보면 현장(시·군·구)에서 지역여건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시·도 시행계획이 마련되며, 시·도 시행계획을 통합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인 입장에서 보면 시·군·구에서 정책기조의 변화에 맞춰 계획을 수립할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열악한 지방 재정 탓에 신규사업을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결국 시행계획에는 계속사업만 반영될 공산이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진은 첫 지역문화진흥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기본계획안을 근간으로 시·도 시행계획안을 마련하고, 이 계획에 맞춰 시·군·구 사업을 취합하여 시·도 시행계획을 확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전라북도 시행계획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지역문화진흥법」(이하 진흥법)과 기본 계획의 내용을 토대로 전라북도 시행계획안을 수립한 뒤에, 시·군 관계자 설명회를 거쳐 시·군별로 전라북도 시행계획안에 대응하는 사업을 발굴하거나 계속사업을 작성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연구진은 자체 발굴한 사업과 전라북도 및 시·군 계획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3대 목표, 5대 전략, 43개 사업을 도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하되, 지

역 여건을 감안하여 Top-Down과 Bottom-Up<sup>o</sup> 혼재된 방식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 3) 계획 수립의 범위

연구진이 중요하게 고려한 또 다른 문제는 시행계획에 담아낼 지역문화의 범위다. 진흥법에서는 지역문화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으로 정의한다. 문화예술과 생활문화 영역만이 아니라, 문화유산과 문화산업(예: 문화관광, 콘텐츠산업, 전통문화산업)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진은 별도 법률에 의거해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예: 문화재 기본계획, 권역별 관광계획)이 포함하는 영역이나 사업은 시행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지역문화 정의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계획에서 크게 벗어나는 사업(예: 문화산업 중 문화체육관광부 영역을 벗어나는 사업)은 제외시켰다. 하지만 다른 법정계획에 포함된 분야라고 하더라도 기본 계획의 가치에 부합하거나, 문화예술과 생활문화의 창조적 활용에 해당되는 사업은 시행계획에 포함시켰다. 예를 들어 예술관광은 관광영역이지만 예술의 창조적 활용이기 때문에 시행 계획에 담았다. 이밖에 시행계획을 총괄하는 전라북도 문화예술과의 업무영역도 고려했다.

광역자치단체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역할에 부합하는 사업을 구상하자는 것은 연구진과 전라북도 담당공무원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기초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것보다 전라북도가 통합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이라든가, 대형 국가예산사업 발굴, 지역문화진흥체계 구축, 제도 정비 등이 그러한 사업이었다. 이에 반해 지역주민을 상대로 직접 진행하는 사업은 시·군 시행계획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전라북도 시행계획에 ‘주민주도형 체계구축’과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과 역량강화’ 등이 핵심전략으로 담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밖에 연구진은 계획기간(2015~2019)에 완료될 수 있거나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발굴하고자 했다. 이 역시 전라북도 문화예술과와 합의된 내용이다.

구분	내용
지역문화진흥법 및 기본계획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문화(문화격차 해소 포함) 및 문화인력, 문화의 창조적 활용 중심</li> <li>문화예술진흥법과 관련된 예술진흥은 제외: 별도의 예술진흥계획 필요</li> </ul>
타 영역에서 수립된 법정계획과의 중복성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존계획: 문화재 발굴 및 보존 관련</li> </ul>
전라북도 차원에서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역할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체육관광부는 지원 및 제도, 인력을 중심으로 추진과제 발굴</li> <li>전라북도는 제도, 인력, 체계구축, 지원업무, 대형국가예산사업 등을 중심으로 과제를 발굴: 실제 현장 추진 사업은 시군 및 단체 역할</li> </ul>
계획 기간(5년) 안에 실현 가능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 기간 동안 사업이 완료되거나 성과가 도출될 수 있는 사업 중심</li> <li>중장기(5년 이상) 계획은 별도의 전라북도 문화예술계획 수립 필요</li> </ul>

〈표2〉 전라북도 시행계획의 수립범위 설정기준

## 2. 시행계획의 전략 도출 과정과 내용

### 1) 정책기조와 지역여건 분석

전라북도 지역문화진흥의 비전과 목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진은 지역문화정책의 기조와 지역문화의 여건을 분석했다. 정책기조의 변화는 진흥법과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이 기존 정책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봤다. 시·도 시행계획은 진흥법과 기본계획의 방향을 근간으로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진흥법을 검토하면서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도를 개선하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지자체와 주민이 주도하는 문화자치를 핵심가치로 삼아야 한다.

셋째, 생활문화가 강조되는데, 스스로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지역문화를 진흥하는 핵심요소로 전문인력과 네트워크가 강조된다.

기본계획에서 강조된 내용도 유사하다.

첫째,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환경(생활문화시설, 매개인력, 활동무대)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강조하는 정책단위는 아파트, 마을 등 생활권이다.

둘째, 지역문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역량을 강화시켜줘야 한다. 지역문화 지표개발, 기초통계 구축도 중요하다.

셋째, 기존 정책과 달리 지역문화자원의 창조적 활용이 강조된다. 정책방향이 문화유산의 보존·보호에서 활용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진은 진흥법과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기존 문화정책과의 차이점을 분석한 뒤에, 전라북도 문화정책(2012년 추진된 삶의 질 정책)과 비교하면서 지역문화진흥의 새로운 기조를 도출했다. 아래 그림은 이러한 분석과정을 전라북도 상황에 대비하여 도출한 기조변화 흐름도이다.



〈그림 2〉 지역문화정책의 기준변화 흐름도

지역여건은 우선 지역문화정책의 요소별 실태를 파악했다. 지역주민의 문화향유실태, 문화유산의 현황과 보존 및 활용실태, 문화기반시설과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운영실태, 지역문화인력의 현황, 콘텐츠산업의 현황, 지역문화진흥의 추진체계, 지역문화재정 등이 분석대상이었다. 이어서 전라북도와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기본계획에 대비해 파악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기본계획에 대응하여 지역사업이 없는 분야가 도출되었고, 연구진은 이러한 분야를 중심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하려고 노력했다.

예를 들어 기본계획에는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한 과제로 강조되고 있다. 전라북도에서는 자체예산을 들여 문화기획자(생활문화동호회네트워크 코디네이터)를 양성하고 시군별로 배치하고 있으나, 기본계획에서 강조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 연구진은 기본계획에 대응하면서, 한편으로 전라북도 담당공무원에게 전문인력을 양성할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하면서 우선과제로 시행계획에 담았다. 연구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전라북도 문화예술과는 사업추진을 확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필요한 지역매칭예산을

확보(국비 1억원 지원에 대응하는 지방비 1억원을 계획)하기도 했다. 그리고 전라북도 문화예술과가 2015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공모를 지역문화기관 및 교육기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였고, 최종적으로 전북대학교(전주문화재단·문화연구창과 컨소시엄)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선정됐다.

기본계획의 '지역문화 역량강화' 과제		전라북도 시행계획	
추진과제	세부과제	기존 사업	신규 사업(안)
1-1.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1-1-1.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역량강화
	1-1-2. 현장 중심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강화	① 콘텐츠산업 인력 양성	
	1-1-3. 지역문화 전문인력 종합인적자원 관리체계 마련		①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근로환경 개선사업

〈표 3〉 기본계획 대응 전라북도 기존사업 분석과 신규사업 발굴 사례

## 2) 비전과 목표, 전략 수립

정책동향과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에, 연구진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시행계획의 비전을 “문화로 융성해지는 전북 창조”로 설정했다. 목표는 “지역문화진흥 기반 마련, 생활문화의 균형적 활성화, 지역문화를 통한 가치 창출” 등 세 가지로 정했다.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은 주요 요소별 문제점과 개선방향,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토대로 다섯 가지로 수립했다.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분석한 요소는 문화인력, 문화시설, 문화사업, 지원체계였다. 기존에 지역에서 문화정책을 다룰 때 문화시설이 가장 앞서 있었다.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시행계획에서는 문화인력을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했다. ‘결국 사람이 답’이라는 지역문화진흥의 명제를 따른 것이었다. 연구진이 문화인력과 관련하여 지역여건을 분석한 결과, 지역문화의 향유부터 창조적 활용까지 포괄하는 세분화된 전문인력(매개, 기획, 창조, 교육)을 양성하고,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방향성이 도출됐다.

문화시설 영역에서는 시·군만이 아닌 기초자치단체 내 생활권 간 불균등 분포와 기존 문화시설의 낮은 활용도가 문제점으로 분석됐다. 전라북도 문화시설 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시설 설립 기준을 초과했으나 지역 내 불균등 분포가 여전했으며, 많은 시설이 활용도가

낮거나 노후화되어 주민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었다. 연구진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위해서는 생활문화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낙후된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개선사업을, 활용도가 떨어진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복합문화공간화 등을 추진하고, 문화시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문화사업을 분석한 결과, 우선적으로 아동 및 노인계층을 위한 맞춤형 문화 향유전략이 필요했다. 또한 전통문화·예술 위주 진흥전략으로 상대적으로 소외 받고 있는 장르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지원이 요구됐다. 전라북도 특화전략으로 한문화의 창조적 활용, 전통문화자원을 콘텐츠산업으로 연계하는 융합전략 등도 시급했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 지역문화진흥정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마중물 차원의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이유에서 연구진은 도 예산을 정액지원함으로써 시·군이 자율적으로 진흥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계획을 구상했다.

지원체계와 관련해서는 5개년 간 지역 및 주민주도형 진흥기반을 구축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진은 주민주도형 정책추진을 위한 생활권(읍면동) 단위 계획을 제안했

### ■ 세분화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균로환경 개선

#### ① 문화향유 증진부터 문화의 창조적 활용까지 포함하는 세분화 된 전문인력 (매개, 기획, 창조, 교육) 양성 및 활성화 위한 지원

→ 전라북도는 문화건강증(전국 2위), 예술창조계층(전국 3위), 창조인력 성장을(전국 1위) 등에서 우위, 이를 매개/교육/창조할 수 있는 전문인력 절대적 부족

#### ② 전국 최고수준의 문화인력 균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조례, 권고안) 및 균로조건 개선(법적 균로조건 준수)

→ 전라북도 문화기획자(코디네이터) 인건비는 생활체육지도사보다 높게 책정됐으나, 기타 문화인력 인건비는 여전히 유사분야보다 낮은 수준이며, 명확한 기준조차 불문명 정부에서 기본안을 제정하려 했으나 시행 불투명, 전북도 차원에서 선도적 추진 필요

#### ③ 문화예술교육인력, 문화복지인력, 생활문화매개인력의 지역문화의 창조적 활용 위한 청년문화기획자 집중 양성 및 활동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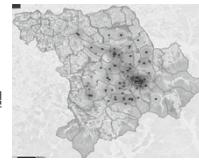
→ 전라북도는 타 지역에 비해 생활문화 전문인력이 가장 많이 양성, 배치되고 있으나, 지역문화지원을 창조적으로 활용(기본계획의 중요한 한축)하는 전문인력 부족 전국 최고의 청년문화기획자 활동무대가 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예)남부시장 청년몰

〈그림 3〉 문화인력 영역의 방향성 도출

### ■ 불균등 분포 해소, 시설의 복합화 및 네트워크화

#### ① 정부의 문화시설 설립 기준 초과했으나, 지역 내 불균등 분포 심화, 시설 부족 지역 중심으로 생활문화센터(공모사업) 확충 추진

→ 전주시 경우 완산구는 시청, 덕진구는 덕진동 주변에 집중 분포하고 있으나 서부신시가지와 송천동, 호성동 지역은 거주인구 비해서 문화시설이 절대적 부족 새롭게 조성되는 생활밀착형 시설[예: 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소극장 등]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기존시설 재생하거나 유휴공간 활용하면서 구도심 집중



→ 시군 간 격차에서 동일 지역 내 생활단위 간 시설격차 해소 위해 정책 집중 필요: 예) 확충 우선순위 부여

#### ②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 지원 통한 복합문화공간화 및 활성화 추진하고, 문화 및 유사시설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기능 강화 및 운영 활성화

→ 노후화된 문화기반시설 중심으로 연차별 리모델링 계획 수립, 지원: 복합문화공간화

→ 생활권(읍면동)/시군/광역 단별 문화시설 및 유사시설 간 협력체계(운영협의체)를 구축, 시설지원의 상호이용 및 프로그램 교환, 인력활용 등을 통해 운영내실화 도모

〈그림 4〉 문화시설 영역의 방향성 도출

### ■ 생활권 계획수립, 협력지원체계 구축, 제도 마련

#### ① 향후 5년 간 지역주도, 주민주도 지역문화진흥 기반구축에 집중.

이의 일환으로 주민주도형 정책추진 위한 생활권(읍면동) 계획 수립

대중음악/콘서트에 대한 복지적 접근: 문화향유 욕구(2013)는 영화(80.5%)가 1위이며,

대중기요·콘서트(29.9%)가 2위이지만, 군 주민 중 관람한 적 없다는 비율이 83.5%

대중문화 부문의 활동 지원: 대중음악 전용시설, 사업지원, K-POP 교육지원, 청작지원 등

#### ② 지자체-법인-민간단체-동호회-생활문화인의 협력지원체계 구축

문화기관 및 시설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 시설 간 운영활성화 도모하고,

생활권 단위의 시설-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함으로써 생활권 문화지원의 효율적 활용

#### ③ 조례제정, 재단 설립 등 지역주도형 문화정책 추진 기반 마련

지역문화진흥법에 대응하는 전라북도 조례제정 또는 개정, 지역문화진흥의 구실체로서 문화관광재단 및 시군별 문화재단 설립 등 지역문화진흥 위한 제도·조직 기반 마련

#### ④ 중장기적 지역문화진흥 재정 확보 방안 마련: 지역문화진흥특별회계 정부 차원의 지역문화진흥특별회계 추진, 전북도 차원에서 특별회계 추진(예. 동부권)

〈그림 5〉 지원체계 영역의 방향성 도출

다. 또한 지자체–법인–민간단체–동호회–생활문화인의 수평적 추진체계도 필요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기초문화재단을 확대하고, 지역문화진흥 특별회계와 같은 재정확보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였다.

연구진은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시행계획의 5대 전략을 도출했다. 즉, 전라북도 기존사업체계를 진흥법과 기본계획에 입각해 재배열하고, 전라북도 여건분석을 토대로 첫째, 주민주도형 체계구축, 둘째, 문화창조 역량강화, 셋째, 생활문화 활성화, 넷째, 취약계층 문화복지, 넷째, 한문화 창조적 활용으로 설정했다.

### 문화다양성 증진, 지역문화의 창조적 활용 강화

- ① 전통문화·예술 위주 진흥전략으로 **상대적 소외 받은 장르 집중 지원**
  - 대중음악/콘서트에 대한 복지적 접근: 문화향유 육구(2013)는 영화(80.5%)가 1위이며, 대중기요·콘서트(29.9%)가 2위이지만, 군 주민 중 관람한 적 없다는 비율이 83.5% 대중문화 부문의 활동 지원: 대중음악 전용시설, 사업지원, 아이들 교육지원, 창작지원 등
- ② 아동 및 노인계층 관심분야 지원 확대, **일상인문학** 등의 영역 강화
  - 전라북도 어린이 전용문화공간은 전북어린이회관 1곳 뿐이며, 거점별·영역별 공간 조성
  - 주민 중심의 일상에 대한 복지적 접근과 콘텐츠와 추진: 예) 벽오지 주민이야기 콘텐츠화
- ③ **한문화의 창조적 활용 강화**: 콘텐츠사업, 문화유산 활용 산업 등
  -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은 이전 문화예술진흥 계획과 달리 지역문화의 창조적 활용 (콘텐츠산업화, 문화관광화)이 강조되는 바, 전북의 특화전략으로 한문화의 창조적 활용에 집중
- ④ **시군 자율 추진 위한 최소한의 재정지원** 및 시군 특화 사업 추진
  - 지역주도, 주민주도 계획 취지 살리기 위해 시군별 자율적 사업추진 위한 정액 지원

〈그림 6〉 문화사업 영역의 방향성 도출



〈그림 7〉 전라북도 지역문화진흥계획 전략도출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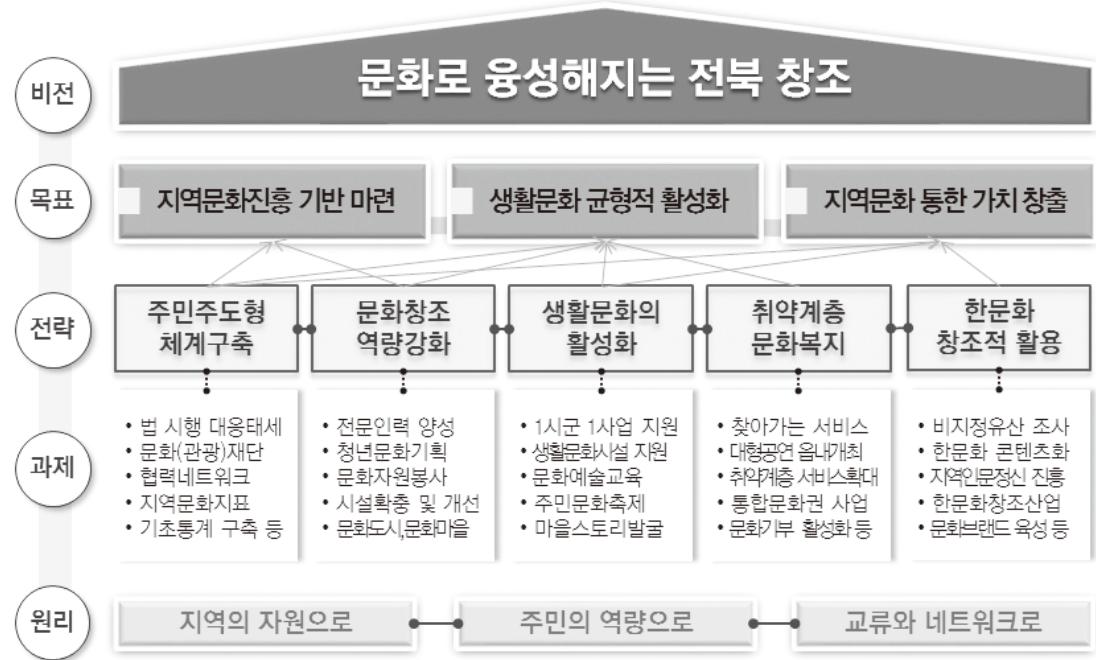
### 3) 전략별 추진과제

연구진은 5대 전략을 수립한 뒤에 전략별로 5년 안에 추진이 가능하거나 추진해야 할 사업을 구성했다. 1차적으로 전라북도에서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과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새로운 전략체계에 맞춰 배치했다. 다른 지역도 유사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시·군에서 추진되는 사업만을 배치하다보면 기본계획이 지향하는 바와 너무 큰 차이가 났다. 한마디로 비게 되는 과제가 많았다. 기본계획에는 기존에 추진되어왔던 사업과 차별화되는 과제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연구진은 기본계획에 담긴 사업을 지역여건에 맞게 재조정하거나,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기본계획에 대응하는 새로운 사업을 제안 받았다. 그리고 발굴된 사업안에 대해 전라북도 문화예술과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기본계획에 대응하는 신규사업안을 확정했다. 다행스러웠던 것은 연구진이 현장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들어 발굴한 신규사업안에 대해 전라북도 담당공무원이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추진이 힘들 수도 있으나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상징적으로라도 계획에 반영하자는 데 연구진과 의견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기본계획의 과제에 대부분 대응하는 시행계획이 수립됐다.

시행계획에 포함된 과제는 5개, 전략은 43개다. 단일사업이 하나의 과제로 설정되기도 했지만 대부분 동일한 사업을 하나의 과제로 설정했다. 예를 들어 ‘도민 문화예술교육 기회 제공’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국악 분야 예술강사 지원, 어린이 예술단 운영, 전북도립국악원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국악교육 등이 하나로 묶였다.

연구진은 발굴된 사업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전라북도 문화예술과와 협의하여 전략별로 반드시 추진됐으면 하는 선도사업을 2개씩 선정했다(시행계획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공청회 등에서도 설명했으며, 전라북도 최종보고회에서도 설명됐다). 법으로 수립된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여건 때문에 추진되지 못한 채 사장되는 것이 지역의 현실이다. 열악한 재정, 단체장의 교체로 인한 정책방향의 전환, 지역역량의 부족, 정부정책기조의 변화 등 이유는 다양하다. 전라북도 시행계획 역시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진은 전략별 신규사업 중 최소한 1~2개는 2015년 이내에 추진할 것을 제안했고, 전라북도 문화예술과가 이에 동의했다.



〈그림 8〉 전라북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전체 계획도

영역	추진과제		기본 계획	계획년도		예산 (백만원)	15년 추진	신규 발굴
1. 주민 주도형 체계 구축	1-1	지역문화진흥 시행 대응태세 수립	4-1-1				-	★ ★
	1-2	전라북도 및 기초문화재단 설립	4-1-2			30	★	
	1-3	지역문화진흥 협력네트워크 구축	1-3-4			200		★
	1-4	지역문화지표 및 환류시스템 구축	2-1-2			150	★	★
	1-5	지역문화진흥 기초통계 구축	2-1-1			260		★
	1-6	지역문화진흥 특별회계 추진				50		
2. 문화 창조 역량 강화	2-1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역량강화	1-1-1			1,560	★	★
	2-2	지역문화 전문인력 근로환경 개선	4-1-2			-		★
	2-3	청년문화기획WEEK 및 레지던스 지원	4-1-2			2,350		★
	2-4	문화자원봉사자 양성 및 활성화 지원	1-2-3			400	★	★
	2-5	문화귀촌 활성화	1-1-2			1,050		★
	2-6	문화컨설팅 확대 통한 연구인력 지원	1-3-2			660	★	
	2-7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지원	2-1-3			101,600	★	
	2-8	생활문화시설 조성	1-2-1			11,900	★	
	2-9	시군별 대표 문화마을 조성	3-3-4			9,000		★
	2-10	거점별 문화도시 신규 지정	3-3-3			8,050	★	
	2-11	문화 · 창의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3-3-2			700		★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에 따른 지역문화 정책계획에 대한 소고 ●

3. 생활 문화의 활성화	3-1	1시군 1생활문화진흥 프로젝트	2-3-3				8,690		★
	3-2	생활문화시설 인력·운영 지원	2-1-3				13,941	★	★
	3-3	도민의 세계적 미술작품 관람권 증진	2-1-4				4,514	★	
	3-4	도심광장·도심공원의 생활문화공간화	2-1-3				1,350		★
	3-5	지역문화 창작여건 조성 및 지원	2-1-3				17,426	★	
	3-6	어린이 창의문화 진흥	2-1-1				18,700	★	
	3-7	도민 문화예술교육 기회 제공	1-2-1				22,334	★	
	3-8	생활문화 동호회 네트워크 지원	1-2-1				8,122	★	
	3-9	작은예술제 개최 및 활성화	1-2-2				1,200		★
	3-10	마을스토리 발굴 및 콘텐츠화	1-2-2				1,350		★
4. 취약 계층 문화 복지	4-1	작은영화관 활용 영화영상 향유 확대	2-2-1				1,610	★	
	4-2	대형 콘서트·뮤지컬 읍내 개최	2-2-2				800	★	★
	4-3	찾아가는 문화향유 서비스 지원	2-2-2				1,200	★	
	4-4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2-2-2				24,857	★	
	4-5	문화적 노후생활 지원: 경로당 배달강좌					4,000		★
5. 한문화 창조적 활용	5-1	비지정 문화유산 발굴 및 조사	3-2-1				500	★	
	5-2	지역문화콘텐츠 DB구축 및 서비스	3-2-3				900	★	
	5-3	세시풍속(의례) 생활화 지원	3-2-1				15,900		★
	5-4	전라북도 인문정신(실학) 문화 확산	3-1-2				1,000		★
	5-5	지역역사 재조명: 백제문화융성 프로젝트	3-1-2				900	★	
	5-6	한문화 상품개발 및 글로벌화 지원	3-1-2				975	★	
	5-7	지역문화브랜드 상설공연 활성화	3-3-6				24,480	★	
	5-8	지역문화 콘텐츠산업 진흥	3-2-3				33,700	★	
	5-9	전북형 특화 영상산업 진흥	3-2-3				2,715	★	
	5-10	전통문화 치유산업 육성	3-2-3				4,100		★
	5-11	한국소리 창조산업 육성	3-2-3				158,600	★	

〈표 4〉 전라북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의 전략과 추진과제(안)

### 4) 전라북도 특화사업

연구진은 기본계획을 수렴하면서도 한편으로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전라북도만의 특화된 사업을 시행계획에 담으려고 노력했다. 그 중에서도 생활문화(문화복지 포함)사업을 발굴하려고 노력했다. 2012년 삶의 질 정책으로 추진한 ‘작은영화관’, ‘시민예술촌(시민놀이터)’, ‘생활문화예술동호회네트워크 및 문화코디네이터 시·군 배치’ 등이 전국 모범사례가 되면서, 지역문화진흥계획에서도 전국 모범이 될 만한 사업이 담기기를 기대하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놀랄만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만한’ 사업이 발굴됐다고 보기是很 어렵지만, 그래도 이번 시행계획에는 나름대로 지역 특화사업으로서 의미를 가질만한 사업이 담겨 있다.

그 중 하나가 ‘대형콘서트·뮤지컬의 읍내개최 지원’이다. 농촌지역(읍·면) 주민에게 문화향

---

유 욕구를 조사하면 언제나 1등이 영화 관람이고, 2등이 뮤지컬·대중공연 관람이다. 영화 관람은 시·군별로 조성된 작은영화관을 통해 해소됐으나, 대형콘서트·뮤지컬 등은 여전히 전주시로 나와야만 관람이 가능하다. 그러다보니 전주시에 있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의 유료관람객 중 90% 이상이 전주·익산·군산시 주민이고, 나머지 11개 시·군 주민은 전체 관람객의 2~3%에 불과하다. 시행계획에 담긴 ‘대형콘서트·뮤지컬 읍내개최 지원’은 전라북도가 예산을 들여 시·군별로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씩 대도시에서 공연되는 대형 콘서트나 뮤지컬 등을 개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은영화관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걸었던 ‘서울 명동의 극장과 같은 날에 개봉영화를 볼 수 있다’는 문구처럼, 농촌에서도 TV에서나 보던 화려한 대중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연구진은 이 사업을 일명 ‘뽕짝프로젝트’로 불렀는데, 뽕짝으로 대표되는 대중공연 관람을 지자체가 문화소외지역 주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문화서비스로 인식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또 다른 특화사업은 ‘1 시·군 1생활문화진흥 프로젝트’이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농촌지역(군)에서 추진되는 지역문화사업은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예: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이나, 전라북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예: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 시민예술촌조성)이 전부이다.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거의 없다. 가장 큰 이유는 열악한 재정상태다. 일부에서는 단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지만, 실제 농촌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신규사업 하나를 시행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 시행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전라북도 시·군 담당자는 하나같이 전라북도에서 정액지원을 해준다면 얼마든지 매칭을 해서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라북도에서는 시·군별 특화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1시군 1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매년 10억 원씩 전라북도 예산을 정액지원해 왔다. 그러면 시·군에서는 10억 원을 매칭하여 총 연 20억 원의 예산을 활용해 지역별 특화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했다. 연구진은 전라북도 문화예술과에 지역문화정책의 ‘1 시·군 1프로젝트’로서 매년 1억 원의 전라북도 예산을 정액지원 하자고 제안했다. 시·군에서 1억 원씩을 매칭한다면 매년 2억 원의 예산이 시·군 지역문화진흥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프로젝트에는 문화시설 조성 등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담당자 역시 이 사업에 동의했고, 예산확보(2016년에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한 문화거리조성사업이 끝난다) 차원에서 2017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 3. 그래도 남는 문제점과 과제

필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연구진,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담당자, 시·군 관계자 간 협력은 잘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그랬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 앞서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립한 기본계획(안)과 지역여건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고 본다.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담당자와 지속적으로 사업안을 논의하면서 향후 실행력을 높이려 한 것은 시행계획 수립에 있어서 의의가 컸다. 물론 여러 사업을 제안해주고 연구진이 내놓은 사업안을 검토해준 전문가, 공청회에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준 현장 관계자 및 시·군 공무원이 있었기에 전라북도 여건을 반영한 특화사업을 시행계획에 담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을 실천하는데 있어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실행력이다. 이번에 수립된 지역문화진흥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2015~2019년이다. 당연히 2014년 하반기에 수립돼 2015년부터 본 사업이 시행되어야 했다. 하지만 빨리 수립했다는 전라북도에서도 2015년 4월이나 시행계획 수립이 완료됐다(연구용역은 2월에 종료됐지만 전라북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은 4월이다). 한마디로 신규사업을 발굴해도 2015년에는 추진할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아직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지역이 많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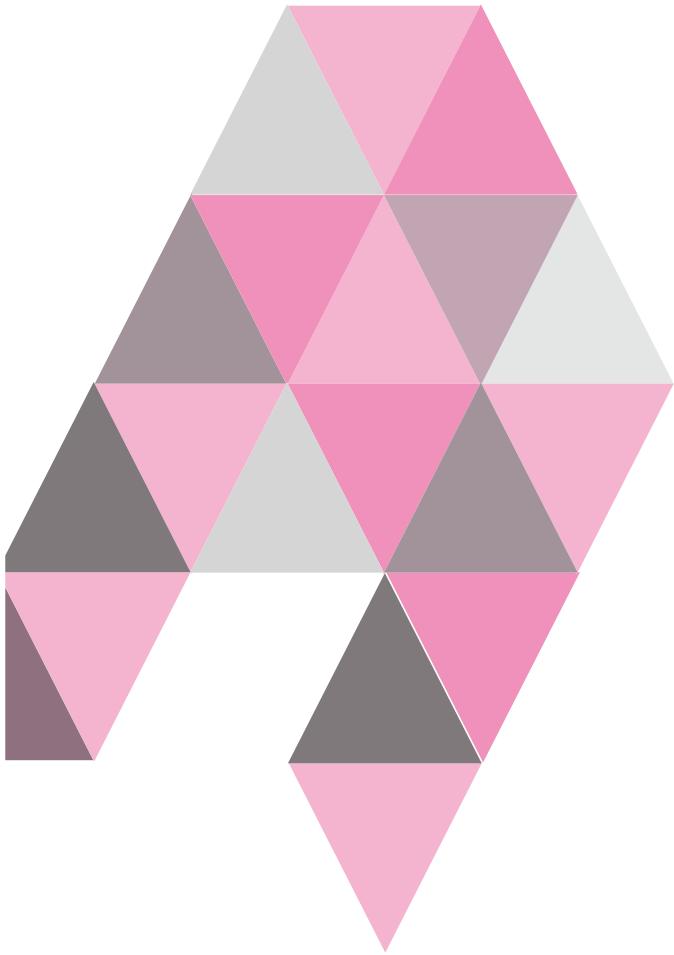
진흥법에서는 시행계획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를 평가하겠다고 하나, ‘그것이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듦다. 필자가 보기엔 전라북도 시행계획에서도 신규사업은 실행력이 50%를 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정도만 달성해도 큰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갈수록 재정이 어려워져 지역문화정책에서 신규사업을 찾기 어려운 가운데 지역문화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될 수만 있다면 지역문화판은 여러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문화 전문가, 현장 관계자, 이 계획을 수립한 연구진이 전라북도 담당공무원에게 요구하고, 설득하고, 도움을 줄 때 가능할 것이다. 또한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심도 있는 고민이 있어야 한다.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체계 역시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처음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에서 기본계획을 수렴했지만, 앞으로 지역문화진흥계획은 진흥법 취지에 맞게 지역 스스로 수립하고, 시·도 시행계획이 모아져 기본계획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사업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지역 역량을 키워야 한다.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시행계획을 지역 스스로 수립할 역량조차 키워내지 못한다면 지역문화진흥은 더 볼 것도 없이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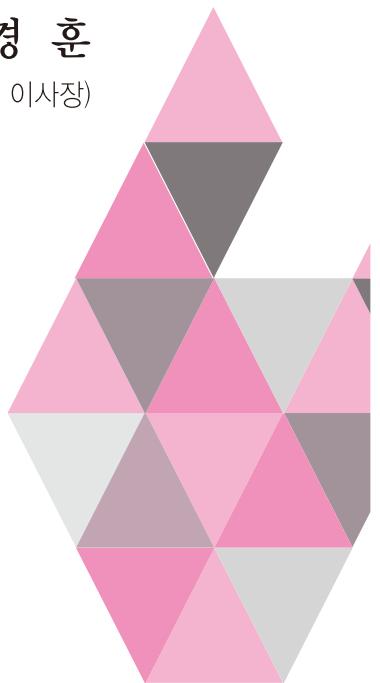
---

을 것이다. 4년 후 지역문화진흥계획을 새롭게 수립할 때는 필진과 같은 연구원 소속 연구진 보다 문화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와 관계자가 주축이 되어 시행계획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실천하길 기대한다.

# 제주의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제언



박 경 훈  
(제주민예총 이사장)







## 제주 주의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제언

제주민예총 이사장 박경훈

### • 지역문화란? 또는 지역문화 · 예술이란?

‘좁은 의미의 문화’로서의 예술과 그 주변의 문화가 지역에서 소비된다는 것은 바로 그 문화 또는 예술의 생산 주체들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산한다는 의미일 것이며, 이러한 문화생산의 지역성이야말로 ‘지역문화’의 본형인 것이다. 소위 중앙이라 불려 온 서울 등 수도권에서 또는 외국에서 만들어진 ‘문화’ 또는 ‘예술’이 지역에서 활력적으로 소비된다고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소비’로서의 ‘지역문화현상’일 뿐 ‘생산’이 ‘결여’됨으로 인해, 지역문화의 자생성과 전통성 그리고 역사적 맥락에서 유의미함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러므로 ‘지역문화’란 지역이라는 ‘장소성’과 특히 그 지역의 삶과 자연환경 그리고 역사에서 배태된 ‘생산’에 중점을 둔 개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예로 필자는 영화 「지슬」의 생산과 소비의 경로를 높이 평가한다. 지역문화의 생산적 측면에서 모범답안에 가깝기 때문이다. 영화 「지슬」은 철저하게 지역문화의 문맥에 속해 있다. 즉, 이 영화는 “지역의 역사콘텐츠를 소재로 하여, 지역의 생산시스템 내에서 지역에서 일차적인 소비를 이루었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으로 그리고 유수의 영화제의 수상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으며, 독립영화 보급·확산 시스템을 이용하여 세계화되었다.”라는 점에서 지역문화의 전범으로 꼽을 만하다. 이는 우

리가 향후 지역문화의 미래를 구상할 때 이루어질 중요한 경로를 체현시켜냈다는 점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기도 하다.

지역문화예술은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 언제나 위기였고 침체기였다. ‘지역문화’라는 용어 역시 10여 년의 짧은 연륜을 지닌 용어다. 90년대까지도 ‘향토문화’ 또는 ‘지방문화’라는 용어로 지역의 문화현상을 수식해왔다. 지방문화는 중앙에 대응하는 용어로, 언제나 중앙을 전제로 존재가치가 부여되는 용어이다. 이 용어의 용례는 결국 중앙에 상응하는 장소로서의 지역이 될 뿐이었다. 이번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사상 최초로 ‘지방’에서 ‘지역’으로 용어를 변경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이러한 지방이 지니는 한계를 절감했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 정책으로서의 문화는 ‘공보(公報)’에서 출발했다. 소관부처 역시 ▶ 공보처(1948) ▶ 공보실(1956) ▶ 공보부(1961) ▶ 문화공보부(1968) ▶ 문화부와 공보처(1989) ▶ 문화부(1990)로 변화해 왔다. 이는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기원이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도구에서 출발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는 강력한 국가주의를 전달하고 전파하는 데 역점을 두게 되어 당연히 중앙집권적인 정책체계를 일원화시켰다. 그 결과 중앙만 있고 지방은 없는 또는 문화정책의 수혜를 우선적으로 중앙이 선점하는, ‘지방배제와 소멸의 문화정책’이 오랫동안 이어진 것이다.

우리가 훨씬 후진적이리라 쉽게 생각하기 쉬운 전근대시대인 조선 후기는 오히려 완결적 구조의 지역문화생태계가 존재했다. 각 지역마다 독특한 지역문화의 문화생태계가 존재했다. 조선 후기 18세기를 전후하여 완성된 조선의 향촌문화시스템, 이 시스템은 조선의 국가이데올로기와 서로 충돌하면서도 상보하면서 성장한 중인계층의 주도하에 각 지방의 문화특성을 살리면서 존재했다. 무·불·유의 습합을 통해 축적된 문화역량은 조선 후기의 민중문화를 꽂고 퍼우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18세기 조선의 지역문화는 르네상스기였다. 적어도 이러한 지역의 문화구조와 시스템은 그 자체로 조선의 문화생태계였다. 각 지방의 가락이 다르고 장르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지만 각 지방의 문화로서 살아있던 시스템, 또한 그 시스템 내에서 전문장인집단에 의해 문화가 전승되면서 재생산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어쨌든 조선식의 문화생태계가 살아 있었다는 말이 된다. 그런 지역문화생태계가 근대의 시기를 거치면서 가혹한 외세의 강점과 독재정치권력의 시대로 인해 극도로 의타적이면서 자생력을 잃어버린 문화로 전락한 것이다. 일제를 지나 해방이 되었어도 아직까지도 이런 지역문화의 자생성과 건강성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지역문화가 처해 있는 상황이다.

### • 지역문화진흥법

지역문화라는 말이 공식적인 법적 용어로 표기되고 상용되는 이 시점은 문화예술판에 그래도 20, 30년 몸담아 온, 지역에 뿌리내리고 지역을 갈무리하고자 했던 일군의 문화인들에겐 격세지감의 시절이기도 하다.

지역문화진흥법이 제기된 것은 참여정부 들어와서 정부가 문화비전으로 제시한 ‘창의한국’과 ‘예술의 힘’을 만들 때다. 크게 보아 이 법안 역시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시작된 셈이다. 2003년 말에 지역문화를 진흥·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민간 전문가들로 이뤄진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구성과 이를 위한 관계 법령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고, 2004년부터 지역문화진흥법과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문화진흥법제정공동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이후 전국을 돌면서 지역문화진흥법과 관련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 토론회 과정 속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 지역문화진흥법초안이 마련됐고, 이를 바탕으로 법안을 마련해 2008년 5월 발의, 12월에 상정됐으나 번번이 제정에 실패했다. 그러나 MB정부를 건너뛰어 현 정부 들어 ‘문화융성’이라는 국정 기조 하에서 2013년 12월 10일에 문화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이듬해 2014년 8월 19일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 제정되었다. 문화계에서는 특히 지역문화계에서는 한꺼번에 생각지도 않은 경경사를 맞은 셈이다.

###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계획의 작성

2015년 7월 문체부가 수립한 지역문화진흥계획 2020은 지역문화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한 법정계획(5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수립·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기본계획으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라는 항목이며, 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6.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또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3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에는 위 8호의 내용을 더 옥 구체화시켰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법 제6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한다.
  1.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 간 또는 관련 단체 간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2. 고유한 지역문화의 보존·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15~2019)에 따른 각 지역의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지침은 다음과 같다.

-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시·도 시행계획을 수립·행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시·군·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시·도 시행계획 수립 시 관할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고, 시·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 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 시 해당지역의 지역문화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함
-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시·군·구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평가결과를 고려, 시·도 시행 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함

이러한 법적 요건들을 고려해보면 지역문화진흥법 시행계획은 강력한 국가차원의 강제성을 띠고 있다. 이는 사실상 지역문화의 분권성, 다양성, 불균등성, 지역특성 등을 고려할 때 다분히 중앙집권적인 본질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한 것이기도 하다. 지역문화에 대한 강조가 도리어 지역문화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 제고와 국가차원의 균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이 정도의 강제성이 필요한 것도 현실이다. 특히 전국의 지역 문제는 사실 어느 한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치해 있는 상황은 모든 지역이 대동소이하다.

### •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0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따라 정부는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 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근거한 법정계획(5년)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수립·추진 준거 및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단위 계획이다.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은 문화의 가치와 문화적 삶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지역문화정책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 및 문화시설 기반 형성 필요성, 지역의 고유한 가치와 정체성을 활용한 문화를 통한 사회경쟁력 제고 및 지역발전 추구, 지역민의 생활권 중심 체감형 문화사업 추진, 지역 간 문화격차 및 문화 불균형 개선, 지역문화 정책추진을 위한 기반체계 구축을 위한 전반적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대략 훑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은 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분석을 통해 다음의 5가지 변화요소를 꼽고 있다.

- ❶ 지역의 인구 변화와 문화수요 변화 : 국가 전체적으로 인구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특히 지방에서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급속 진행(통계청 자료)되고 있는 전체 추세 가운데, 인터넷 등 통신의 발달로 문화공동체 형성이 용이한 여건의 변화와 귀농·귀촌의 지속적 증가와 청·장년층의 귀촌 급증으로 농·산·어촌 지역의 문화수요 증가
- ❷ 지역문화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지역문화의 경제적·사회적 가치 인식 증대, 지역문화를 통한 지역의 경쟁력 제고되고 있는 현실
- ❸ 지역문화 재원의 변화 : 중앙부처 소관 지역문화사업의 대규모 지방 이양을 통해 지역별 문화정책 추진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지역문화 관련 계정의 지특회계 이관과

포괄보조금 방식 도입으로 지자체의 예산 편성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있는 여건의 변화

- ④ 지역문화 전문기관 및 문화시설 설립 확대 : 지역문화재단이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문화원의 역할이 증대(기초 시·군·구 중심으로 229개 설립·운영 중)되고 있으며, 지역문화기반시설의 획기적인 증가가 이루어짐
- ⑤ 지역생활권 중심의 지역문화사업의 증가 :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문화를 접하고 향유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문화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작은 영화관이나 마을미술프로젝트처럼 맞춤형 지역문화서비스 욕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지역문화 공간의 다변화, 다목적화, 가변화와 함께 일상 공간이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는 등 문화 공간의 유연성 확대되는 추세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지역문화 여건의 변화에 반하여 다음의 6가지로 요약되는 현실의 문제점들로 인해 지역문화의 현실과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① 자율적·지속적 사업 추진의 어려움

- 관주도의 사업 추진 : 대부분의 지역문화 사업이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시행
  - 민간의 자치능력 배양에 한계, 지속성 확보의 어려움
- 하향식 정책 추진 : 중앙정부의 하향식 문화정책 및 공급 중심 사업추진으로, 지역 내 문화주체로서의 역량 확보 미흡
- 단기적 성과 지향 : 단기적 성과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지역문화정책 추진의 실효성 및 연속성 결여

#### ② 지역문화인력 수급의 문제

- 지역문화인력 부족 : 지역문화인력의 서울 및 수도권 집중, 전국 문화기반시설, 문화관련 단체 등의 종사 인력은 약 34,000명으로 추정(비정규직 제외)되나 지역문화 발굴·기획·운영 인력은 매우 부족
- 지역인력 양성 및 활용 미비 :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지역인재 양성 및 활용 시스템 마련 필요
- 지역 문화서비스 지원기능 미흡 : 지역문화 사업규모 및 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인력·조직 및 자체예산 확보는 미비

③ 지역문화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시스템 미흡

- 지역문화 거버넌스 취약 : 중앙과 지역 간 협력을 위한 문화행정 거버넌스 체계 및 지역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채널 취약. 전국 주민자치센터 2,765개(문화여가프로그램 22,277개)가 민간협의체(한국주민자치중앙회)를 구성했으나 중앙정부 차원의 연계는 미흡
- 지역문화 협력 네트워킹 미흡 : 각 부처 지역사업의 협력체계 부재로 비효율 발생 및 지역 간 경쟁 심화. 부처간 연계없는 중복사업의 난립(마을만들기 사업 : 문체부 문화 도시·문화마을, 국토부 도시재생, 행자부 희망마을, 농림부 행복마을 등)
- 평가 및 환류체계 미흡 : 중앙부처의 공급자 중심 지역사업 추진으로 결과 분석 및 통합적 관점의 지역문화정책 추진 곤란
- 지역 문화정책 지원기능 활성화 필요 : 지역 문화 전문기관 및 단체의 역량 강화 및 기능 활성화 필요. 지역문화재단, 지방문화원 등 지역문화전문기관이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재원 및 운영의 자율성이 미약하고 문화행정 차원에서의 연계 고리도 취약한 실정

④ 지역별 문화 격차로 인한 문화향유 불균형 발생

- 문화자원의 집중화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지방의 문화시설 운영 자원 격차 ► 지역의 시설 운영 전문 인력의 부족
- 문화향유 지역격차 잔존 : 농어촌 지역, 군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관람 기회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지역 간 격차 존재

⑤ 지역문화기반시설의 운용 미흡

- 문화기반시설 운영의 어려움 : 예산부족으로 인한 경영난, 콘텐츠 및 인력부족 등. 제주도내 문화시설 문제점(도민대상 설문)으로 운영콘텐츠 부족 39.3%, 전문 인력 부족 22.1%(제주일보, '13.11.27)등이 지적됨
- 문화기반시설 노후화 및 활용 미비 : 지역문화시설의 프로그램 운영 미흡과 시설 노후화로 인한 리모델링 문제 대두. 전국 문예회관 공연프로그램 가동률 34.8%, 도 지역 28.4% / 전국 220개 문예회관 중 2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이 62개(28.0%)('13 공연실태조사)로 파악됨

#### ⑥ 지자체별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재정 여건 차이

- 지자체의 재정여건 변화 :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저하로 인한 문화재정 상황의 악화. 군지역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자체의 절반 수준에 불과
- 문화재원 부족 : 지역의 전체 예산 대비 문화 분야 예산비율의 지속적 하락. 2010년 16개 시도 평균 2.01%(광역시 2.23, 광역도 1.80)에서 2014년 16개 시·도 평균 1.78%(광역시 2.05, 광역도 1.50)로 하락

#### ⑦ 특화된 지역문화자원 발굴 미흡

- 하향식 예산지원 : 단위사업별 하향식 지원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현장 중심의 사업 추진 곤란. 기본적 사업설계 후 예산 지원으로 인한 지역의 자발성 미흡, 위탁사업의 증가로 자체 기획사업 추진 감소
- 지역문화 벤치마킹 추세 심화 : 창조성·독창성에 기반을 둔 지역문화 육성이 아닌 획일화된 지역문화의 확대. 2013년 문체부 전국 시·도별 축제총괄표 내 644개 축제 중 벚꽃축제 10개, 한우축제 8개, 인삼축제 7개, 사과축제 6개 등 유사종복축제 다수
- 결과 중심의 지역문화 추세 : 지역문화가 삶의 과정이라는 인식 미흡으로 인해 경제적 관점에서 결과 위주의 지역문화 사업 추진. 관람객 수, 방문객 수, 경제적 효과 등 정량적 결과로 사업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문제의식은 크게 세 가지 범주에서 요약된다.

- ▶ 첫째는 문화인력이 절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는 오랜 중앙집중식 문화정책의 산물이다. 지역에서는 문화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으니 결국 서울로 중앙으로 인재유출이 이루어지면서 지역문화의 전통과 특수성을 이해하는 한편 지역의 콘텐츠를 발굴·활용하여 이를 문화적으로 가공해내는 전문가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 두 번째 범주는 문화행정의 갑질과 오랜 관습에서 기인한 것들이다. 특히 행정제일주의로 거버넌스의 부재와 행정의 관성주의가 낳은 폐해다. 중앙에서 하고 난 후에야 이를 베끼는 관성, 결과 중심의 사업방식 등은 모두 행정이 그동안 유지해 온 오랜 전통이다.
- ▶ 세 번째 범주인 지역문화예산의 경우도 문화의 시대, 문화의 가치를 분별 못하는 행정의 책임이 크다. 그동안 자치단체장들은 문화는 말로만 하고 자신의 치적과 조급한 성과주의의 수단으로 문화를 인식하는 경향이 대부분이었다. 결국 현재 중앙정부에서

진단하고 있는 지역문화의 문제점은 그만큼 정부 자신의 오류에서 기인한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특히 지방행정의 그동안의 관성과 사업스타일을 새롭게 혁신하지 못한다면 기본계획은 계획일 뿐인 것이다.

다음은 이러한 여건분석과 현실진단에 기초해 설정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비전과 추진목표 중점추진과제다.

앞의 여전에 부합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제사업으로 물화되는 ‘중점추진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지역문화 역량강화를 위해

-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 : ⑦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⑨지역문화 전문인력 현업종사 지원, ⑩지역문화 전문 인력 종합인적자원 관리체계 마련
- 생활문화 진흥 : ⑦생활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⑧생활문화공동체 형성 및 활동 지원, ⑩문화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
-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 ⑦지역문화진흥 관련 법·제도의 정비, ⑨지역문화 현황 조사 를 통한 지역문화 실태 파악, ⑪도시 및 지역의 통합적 문화계획 수립, ⑫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역문화사업 지원

② 지역문화 격차해소를 위해

- 맞춤형 문화기반 조성 : ⑦지역별 인구 변화와 수요를 감안한 문화기반시설 조성 추진, ⑨지역문화기반시설 균형적 확충, ⑩지역문화기반시설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 문화접근성 향상 : ⑦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확대, ⑨문화소외계층 프로그램 확대
- 지역문화재원 확충 및 다각화 : ⑦지역문화 지원방식 개선, ⑨중앙과 지방간 협력을 통한 재정 확충 및 체계화, ⑩지역문화재원 다각화

③ 지역문화 발굴창조를 위해

-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 ⑦지역문화루트 개발, ⑨근·현대 역사문화·공간 및 유·휴 공간 창조적 재생, ⑩지역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 활용, ⑪마을별 전통놀이 등 문화 자원 복원 및 확산
- 지역문화 가치 발굴 : ⑦문화자원의 발굴·개발·활용 체계 구축, ⑨지역 생활문화자원 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 ⑩지역별 특화된 콘텐츠기반 마련
- 지역문화브랜드 세계화 추진으로 국토 및 지역문화 브랜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 ⑦지역문화특화사업 추진, ⑨문화도시 지정 및 확대, ⑩문화지구 지정 및 육성, ⑪지역문화브랜드 선정 및 확산을 중점 추진사업으로 설정하고 있다.

3개 항의 중점추진과제 중 몇 가지만 살펴보면 ①지역문화 역량강화와 ②지역문화 격차해 소는 현재 지역문화 수준에 대한 진단에 근거한 것이다. 사업추진방향에서 ‘지역문화 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 기획·개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함(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제8항)’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즉 지역에서는 소위 문화기획전문가

가 절대 부족한 현실을 인식한 것이다.<sup>1)</sup> 이 사업에서 눈여겨 볼 것은 지역문화인력 직종 개발 및 인증제(등록제) 도입으로 문화기획자, 문화매개자 등 지역문화전문분야 직종 개발과 지역 문화 전문인력(문화여가사 등 포함) 자격증 제도 도입 검토 및 기존 문화인력 관련 자격증(학예사, 문화예술교육사 등)과의 연계인데 이는 제도적 도입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다.

지역문화 역량강화사업에서 특히 눈에 띠는 것은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지역문화생태계 구축’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그동안 필자도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것으로 지역의 문화진흥은 단순히 정책사업이 아닌 생태계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생각과 일치하는 대목이다. 계획은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 자체의 역량강화를 통한 종합적·유기적 지역 문화생태계 구축”과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기반조성 추진 필요”를 들고 있다. 특히 지역문화 기초현황 조사 및 지표 개발 지역문화 현황 조사를 통한 지역문화 실태 파악을 위해 2~3년 단위의 문화자원, 문화활동 등 지역문화 세부실태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문화격차를 포함한 지역문화 현황조사, 문화통계 확대 실시를 구체적 사업으로 요구하고 있다. 문화향수 실태 조사,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등 기존의 양적 기초조사를 보완, 지역문화현황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역문화생태계를 진단할 수 있는 다원적 지역문화생태계 지표 개발 및 평가시스템 구축과 지역규모 및 유형에 따른 지역행복지표 포함을 요구하고 있어 기존의 실태조사의 수준을 넘어서는 디테일한 생태계 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문화생태계 구축을 디테일하게 파악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또한 문화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을 국가나 지자체의 각종 계획과 정책 수립 시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sup>2)</sup> 이는 최근 도시재생이나 마을만들기 등과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문화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문화주체역량강화사업’에서 지역문화재단 조례 제정, 지침 마련 등을 통해 문화재단의 정책적 위상과 실질적 기능의 강화와 지역문화재단의 예산 편성과 사업 집행의 자율성 강화, 지자체와 지역문화기관간의 정책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수평관계 유지, 위탁사업에 대한 사업 수행관련 자율성 확대 추진 등도 이번 계획을 통해

1) 그리고 사업으로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지원’으로 들고 있으나, 그 대상으로 첫 번째를 대학으로 설정한 것은 제주지역에는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제주지역의 경우 문화기획 관련 전문가가 절대 부족한 이유는 대학에서 이들 전공학부를 개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대학에서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전공학과의 개설 등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무했던 것이다. 그 결과 지금 현재 도내 국·사립대학 중 문화매개자를 배출하는 학과는 단 한군데도 없으며, 대학에 이를 수용할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교수진 역시 전무하다.

2) 문화기본법 제5조제4항에 의거 국가와 지자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문화 환경,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

그동안의 제기되어 온 문화행정과 문화기관간의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문화 격차해소 중점추진과제에서 수행될 ‘지역문화재원 확충 및 다각화’사업에서 기존의 중앙정부에 대한 지역문화 지원방식 개선을 위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역협력형사업 운영의 경우 보조사업을 포괄보조 형태로 개편하는 것, 지역 이양사업의 평가 및 개선책으로 지역 이양사업을 전달 체계형에서 지자체 자율형 사업으로 개편하는 것, 예산지원 방식의 개선책으로 단위사업별 지원에서 관련사업의 통합추진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 각 부처 문화관련 사업의 연계·통합 추진 시스템 구축 및 지역의 재정자립도와 지역발전주기에 따른 매칭비율을 차등화하는 것 등은 혁신적인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가칭) ‘지역문화진흥특별계정’ 신설 추진사업 역시 중요한 사업이다.

또한 문화도시 개념을 지역문화진흥계획의 범주로 포착하여 구체화시키고 있는데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의거한 문화도시의 지정사업 확대, 문화도시심의위원회 구성,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지원사업을 문화도시·문화마을사업과 연계 추진, 기존의 실패로 평가받는 문화지구 운영제도를 대폭 개선해 문화지구 관리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한 관리체계 내실, 부적합업종 및 업태 행위 등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 기타 옥외광고물 관리 등 법령 정비를 통한 문화지구 운영 내실화 등은 유명무실화한 문화지구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문화지구 특성화사업은 기존 지정된 문화지구사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문화진흥원 설립 운영의 경우 현재 지역별 문화예술재단과의 중복성을 피할 수 없어서 이들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구성·운영 역시 기존의 지역마다 구성된 문화예술위원회와의 중복성이 큰 문제로 대두된다.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위원회가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후 체제를 정비하여 실질적 조직으로 가동되는 상황인데, 이 위원회의 사업이 실제적으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사업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이다.

이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단위에서만 기간과 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 별로는 분권정신과 지역자율성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현재의 지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 문화예술재단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국가 단위의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내용들은 예상과 달리 상당한 부분에서 지역의 실태를 파악하고 반영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 점은 이전의 국가계획이 안고 있던 지역 현장성의 결여를 많이 극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획 수립자들의 활동이 돋보인다 할 수 있다.

이번에 수립해야 할 제주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은 위의 여러 가지 변화상을 담고 있다.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은 정부가 각 지역에 제시한 것으로 이러한 사업들은 다시 각 지역의 여건에 맞게 시행계획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은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15~2019)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야 하는데, 지침에는 “시행계획 수립 시 해당지역의 지역문화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의 문화예술기관과 각 예술단체의 의견을 물어야 하며 이를 시행계획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자칫 과거의 관성처럼 정부 계획의 카테고리 안에 현재 시행중인 사업을 억지로 끼어 넣는 식의 시행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의 취지를 망각하는 일이며, 기본계획에 제시된 방향성마저 일탈하는 퇴행적인 일이 되고 말 것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이 사업은 이미 지난 8월에 시작되었으나 이 계획을 위한 공론화가 한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지침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지역문화관련기관이나 문화단체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계획에 녹여내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다. 이를 어떻게 풀 것인가가 도정의 당면 과제이다.

### ●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앞서 정부가 제시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살펴보았는데, 대부분 제주 지역에도 그대로 적용 가능한 것들이며 충분히 필요한 사업들이다. 또한 이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이 처한 문제점을 반영한 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사업 중에는 제주도가 먼저 나서서 이미 시행하는 사업도 있으며, 전혀 접근해보지 못한 사업들도 열거되어 있다. 제시된 사업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도 이를 뒷받침하는 시스템과 재원이 없다면 실현가능성이 없는 페이퍼워크에 그칠 뿐이다. 이를 사업 중 제주도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할 사업들을 몇 가지만 제시해보고자 한다.

#### ① 문화생태계에 기반을 둔 장단기 문화정책의 수립

‘생태계(Ecosystem)’란 하나의 자생적 순환구조를 이루는 자연의 순환시스템(circulation system)으로서 시스템 외부로부터 별도의 개입 없이도 스스로 생성과 소멸의 합법칙성이 관찰되는 순환체계를 말한다. 자연생태계의 순환고리는 ‘생산–소비(1, 2차)–분해’라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원리가 문화예술생태계로 오면 ‘창작(생산)–유통–향유(소비)’의 구조로 등치된

다. 즉 ‘태양에너지=창작자원(재원)’, ‘유기체=예술가, 창작집단, 전문가’, ‘무기체=정책, 지역문화전통, 자연환경, 사회환경’으로 바뀌면서 생태계의 구성요소가 되며, 이러한 요소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스스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럴 경우 문화행정은 이러한 각 요소들이 순환고리내에서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작동하게 하는 조율자 역할을 하게 된다.

문화생태계 구축이란 이러한 문화생태계의 구성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자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즉, 문화에도 생태계가 존재한다는 말은 자생적인 구조와 원리가 작동되는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말이기도 하다. 문화 또는 문화예술계의 건강한 선순환구조는 바로 생태계의 작동원리를 따른다는 말이다. 그동안 우리는 문화계 또는 예술계를 사회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한 부문으로 인식하기 했지만, 이 세계가 생태계적 작동원리로 선순환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책적 접근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그 결과 자생력을 지니는 문화생태계가 조성되지 못한 채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지원사업이나, 돌출적 치적쌓기의 사업이 도정이 바뀔 때마다 추진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런 식의 정책사업들은 그 성과가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지역문화예술계에 자양분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휘발성사업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 ①-1 변화하는 문화생태계 파악, 그에 기반을 둔 문화정책 필요

전통적 의미의 문화생태계는 아날로그 문명의 판 위에 놓여 있었으나 디지털문명의 도래로 인해, 이제는 두 개의 문명판 위에 놓인 상황이다. 또한 그 판 위에 전문가그룹을 중심으로 한 문화생태계, 즉 생산과 소비가 분리된 고전적 의미의 문화생태계 뿐만 아니라, 창조와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는 새로운 주체들에 의한 문화생태계가 겹으로 존재하는 시대로 진입했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단순히 시민이나 일반인들을 무조건 향유의 주체나 소비의 주체로 상정하는 일은 낡은 패러다임이 되어 버렸다. 또한 이러한 구별 짓기와 경계 짓기가 더 이상 가능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들 일반인들이 생산주체로 나서고 스스로 소비하는 영역 역시 중요한 문화예술의 생산 영역으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맞춤형 육성 정책이나 병목현상을 제거하는 생태계조절의 역할을 문화정책의 과제로 안아야 할 것이다.

### ①-2 지역문화생태계 관점에서의 지역문화행정의 역할

지역문화를 문화생태계적 관점에서 사고한다는 것은 문화생태계의 구축과 자생적 성장에 중점을 둔 문화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문화행정은 생태계 내의 조절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태계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축적된 기초 데

이터들과 각종 평가지표들이 활용되어야 한다. 특히 문화예술 실태에 대한 원천데이터는 철저하게 문화생태계의 현실에서 건져 올린 충실한 정보수준이 유지되어야 한다. 마치 이것은 자연과학계의 기초D/B를 추출하는 것과 같은 중요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 일종의 문화지표조사나 세부적인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각종 문화기관의 연간 행사실적 및 예술가들의 활동사항, 그리고 예술시장의 수요 및 공급 상태의 파악 등
- 다양한 문화생태계의 지표들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계량기법들을 활용해야 함

또한 문화행정의 장단기 계획의 수립 역시 철저하게 이 문화생태계의 조절자 역할에서 접근해야 한다. 5년간 시행계획 역시 이러한 데이터에 근거해 작성되어야 마땅하다. 즉, 문화생태계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급작스럽게 추진되는 사업들은 오히려 문화생태계의 균형을 파괴하고 교란시킬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실에서 이러한 예를 종종 목격한 바 있다. 바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하는 과시성, 일회성 사업들이 그러한 예인데 결국 이렇게 일회성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장기적인 성과나 효과를 내기보다는 예산만 낭비하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히 퇴임 후에도 그 후유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악성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도 차원의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문화생태계의 상시적 모니터링과 그에 의해 도출되는 장단기 계획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과 생태계적 분석에 의한 선후차성의 사업들이 이번 시행계획에 담겨야 할 것이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문화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러한 지역문화생태계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제주도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을 통해 현재 「창작여건 개선을 위한 문화생태지도 구축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제주지역 문화생태계조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12월 중 1차 완료될 이 조사에는 기존 실태조사와는 다른 세부적인 사항들이 정량적으로 통계화된다. 여기에서 얻어진 지역문화지표의 각종 데이터를 이번 시행계획에 적절하게 반영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타 지역보다 먼저 시작한 생태계구축을 위한 기초사업이기도 하다.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도 제시된 바와 같이 적어도 2~3년마다 정기적으로 생태계 실태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이렇게 누적된 생태계의 각종 정보들은 제주지역문화생태계의 전체적인 흐름과 추세를 파악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② 문화행정의 혁신

앞서 정부의 기본계획에서 대부분 지적된 문제점들 중 행정의 관행이 파생시킨 지역문화의 문제점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특히 문화행정의 혁신은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한 전제가 된다. 왜냐하면 지역문화의 경우 행정의존도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문화직렬이 부재하고 순환보직제에 의해, 문화 관련 비전문직인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이 주도하는 문화행정 현장은 여전히 사회의 흐름, 문화계의 변화와 그 욕구를 따라 잡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또한 여전히 일회적인 아이디어에 의존하여 사업을 발굴하는 관행에 젖어 있거나 정말 제주를 위한 장단기사업에 대한 정책적 안목이 부재할 때, 아무리 도지사가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부르짖고 문화예산을 증액시킨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제주문화예술의 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문화부서의 구조개편과 인력의 수급, 문화적 마인드의 확보 등은 문화행정의 가장 시급한 요소들이다.

### ③ 문화인재 양성정책의 시급한 시행

문화인력의 부족은 비단 제주만의 문제는 아니다. 또한 제주는 그나마 최근 급증하는 이주민들 중에 소위 문화이주자들이 많기 때문에 미봉책이긴 하지만, 이들을 지역문화의 현장에 잘 접맥시킨다면 당장 부족한 인력을 충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제주대학교 등 도내 대학에 제주의 역사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정보 습득과 문화예술의 특수적 전문성 함양이 가능한 문화분야 전공과목이 개설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문화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예술고등학교 설립을 통해 수미일관한 중등-고등교육과정을 정립시키는 것은 시급하면서 장기적인 과제이다. 우선적으로 지역 내 기성문화기획자들을 속성으로 양성하는 과정이 개설되어야 한다. 현재 재단에서 문화기획자 양성과정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좀 더 정규적인 과정으로 격상시키고 조속한 기간 내에 문화인재교육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이 수립되어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에 단기·장기사업으로 담아야 할 것이다.

### ④ 운영 중인 문화기반시설의 조속한 인력 확충

제주도내 문화기반시설은 인구 대비 어느 정도 확충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소프트웨어와 인력에 대한 투자가 훨씬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시설기관에 정원대로 갖추어진 것은 일반행정직과 시설관리직이 대부분이다. 그 시설과 기관을 운영하면서 생산성을 만들어내야 할 인력이 없어 제대로 사용되지도 못한 채 시설은 낡아가고 그것을 관리하는 행정직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셈이다.

제주의 대표도서관이라는 한라도서관의 전문사서는 단 4명이다. 직원이 없는 것이 아니다. 14명의 현원 중 다수는 관리직인 일반행정직과 시설관리직 공무원들 뿐이다. 대표미술관인 도립미술관의 경우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예연구실이 없는 미술관이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 시설투자는 하면서도 사람에게는 투자하지 않으면 문화시설이나 기관 역시 제 역할을 할 수 없으며 결국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도내 20여 개의 박물관, 기념관, 미술관 등 문화관련 기관의 장이 도립미술관을 제외하고 일반행정직의 둇인데, 이는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전문기관의 창의성을 살린다는 거버넌스 차원에서도 부적절한 것이다.

#### ⑤ 타 부서사업에서의 문화예술 영역 확장과 역할 확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마을만들기나 각종 도시재생관련사업들은 기실 문화를 통한 마을이나 도시공간을 업그레이드 하자는 것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하지만 각 부처의 사업들이 분산되다 보니 지역에서 진행되는 순간 이 사업들의 공통성은 사라지고 부처 간 유리벽에 갇혀 시너지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필연적으로 중복성, 낭비성은 물론 칸막이 사업의 내성만 길러주는 꼴이 되고 있다. 현재 각 부처별 사업들은 “모든 사업은 문화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문화연관성이 높은 것이다. 도정이 이러한 부처 간 칸막이 관성을 걷어내고 도 차원에서 통합 또는 상호연계관계 속에서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나오도록 유도하거나 직접 중간자 역할을 하는 일이 중요하다. 기본계획에도 이러한 사항들은 적시되어 있지만, 특히 제주도의 특성상 관광과 연계한 각종 사업들, 도시계획이나 재생과 관련한 사업추진에 있어 문화 분야의 역할을 분명하게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타부서가 문화사업을 추진할 때, 특히 원도심의 경우 문화재 관련 사업이 주종을 이루는데, 이런 경우는 문화정책과와의 협의를 통해 도의 문화정책과의 중복, 혼선을 방지하고 상호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문화 분야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사업태도가 요구된다.

#### ⑥ 급증하는 이주민 예술가들에 대한 배려와 정착 지원

1년에 1만 명의 인구증가 폭을 보이는 현재의 제주는 가파른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문화 예술 분야 역시 곳곳에서 이주민들이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문화적 사건을 벌이고 있다. 문화이주민의 경우, 정착성이 귀농이나 귀촌보다 떨어진다는 점에서 그들을 대상으로 장기지속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문화이주민들의 연착륙은 지역문화의 건강한 자원이기도 하다. 모든 문화는 고이면 썩는 법이다. 문화이주민들은 고인 지역문화에

새로운 기폭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주민 예술가들이 지역에 안착하는 것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에서부터, 마을 공동체와의 결합 여부, 지역동동체 소속 여부 등 다양하고도 복잡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

이주민예술가들을 위한 별도의 제도적 지원이나 사업 기회의 부여는 지역에서의 활동의 장을 만들어 준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으나 자칫 기존 지역문화인들과의 위화감 조성, 화학적 결합의 실패에서 오는 갈등구조의 양산 등의 위험성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주민에 대한 정책적 지원 역시 문화생태계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이다. 현재 이주작가들은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 지역에서의 활동기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문화기획에 대한 역량을 지니고 있는 인적 자원을 우선적으로 도내 사업 추진 현장에 접맥시켜 활동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이주민예술가들의 활동영역과 지역 정주실태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주도의 모든 예술가가 잘 지낼 수 있는 정책이 이루어진다면 그 혜택은 이주민들에게도 저절로 누릴 수 있는 것이기에 모두를 위한 정책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더욱 급선무라 하겠다.

#### ⑦ 제주 지역 특성에 맞는 적정사업의 추진

현재 제주시 삼도2동이 문화마을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서귀포시 역시 올해 신청 중이다. 또한 역으로 문화도시사업은 서귀포시가 2014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문화도시 조성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2015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문화마을사업을 신청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문화도시 사업이야 그렇다 치지만 문화마을사업은 제주지역의 특성화된 문화자원이 풍부한 문화마을을 발굴하여 전통문화와 새로운 문화주체를 세우는 사업으로 농촌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가령 제주도 단위의 정책적 차원에서 ‘해녀유네스코유산’ 등재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녀마을을 선정하여 문화마을사업을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부처사업이라고 무작정 끌어 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현재 필요한 곳이 어디이며, 어디에서 최적화된 사업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깊은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화의 거리사업 역시 테마거리, 특화거리, 문화거리 등 다양한 명칭으로 시 단위, 도 단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다. 이 또한 적절한 장소에 적정한 사업이 안착되지 못한 결과다. 마을은 마을대로, 행정동(洞)은 행정동(洞)대로 마치 공모사업시대를 만난 듯하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사업 역시 문화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국적 없는 벽화들을 양산시

킨 결과 오랜 시간의 켜가 앓아 있던 마을의 벽들이 모조리 지워져버렸다. 이것은 공해나 다름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중앙부처의 사업은 물론 행정시, 행정동의 사업들에 대한 콘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이다.

시행계획에는 이러한 각 부처 간, 행정시 간 각종 유사사업이나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한 방안도 반영해야 할 것이다.

### ● 마치며

지역문화진흥법은 이후 지역문화와 관련해서는 가장 영향력이 큰 직접적인 상위법령으로 작동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문화관련 법령 중에서는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 법령 역시 시행에 따라 많은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법령과 시행령, 시행계획 등에 의거한 지역조례의 제·개정 및 재정비 역시 시급한 일이다.

지역문화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담은 이 법 제4조에 따르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에 따라 지역문화 관련 조례의 제·개정에도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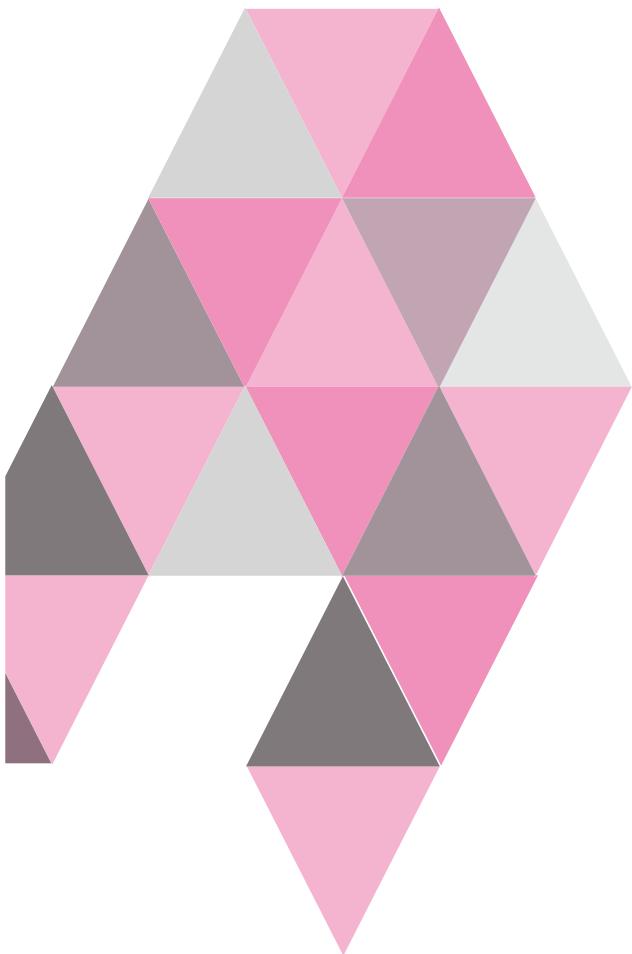
현재 원도정은 역대 어느 도지사보다도 문화예술의 발전에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육성 및 재정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산 비율은 2.8%로 전국대비 상위 수준에 이른다. 도지사는 3%로 문화예산시대를 공언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제주문화 역사상 가장 중요한 변화의 계기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때마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이라는 국가법령에 따라 지역문화의 현실을 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되고 보장되는 시대를 맞았다. 여러모로 지역문화의 판을 업그레이드시키기에는 가장 호조건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래서 이번 시행계획 수립은 지역문화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일로 결코 실기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필자는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에 대한 개략적인 분석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긴급한 것들을 요약 정리해 보았다. 지면 관계상 그 모두를 세세하게 달지는 않았지만, 현재 시행 중인 사업들이나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사업 중 제주지역 현실에 적

용가능 여부와 선후차성에 따라 사업과 예산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필자가 제시한 사업들은 시행계획의 행간에 녹여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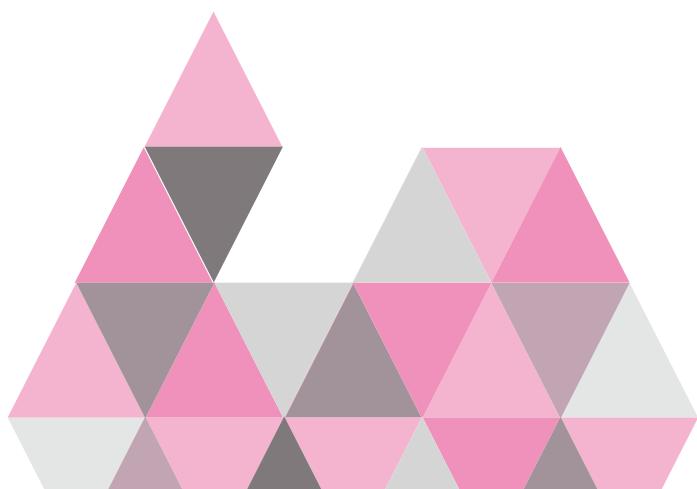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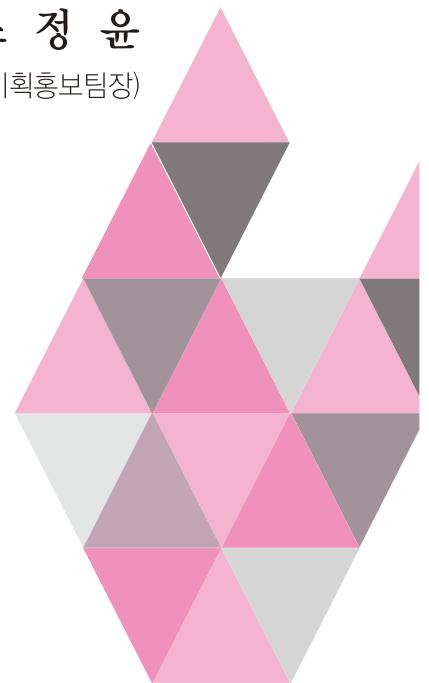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에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위원회를 비롯하여 제주예총, 제주민예총 등 문화예술단체, 제주문화예술재단, 도립미술관, 한라도서관 등 대표적인 문화기관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다양한 문화예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 되기를 희망한다.

# 지역문화시행계획에 따른 시도문화재단의 역할



조정윤

(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팀장)







## 지역문화시행계획에 따른 시도 문화재단의 역할

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팀장 조정윤

### 1. 들어가며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정책개발, 문화예술의 특수성을 반영한 유연한 운영 체제를 위해서는 ‘행정과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1997년 국내 최초로 경기문화재단이 설립되었으며, 2001년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부천문화재단이 설립된다. 그 후 2000년대를 거치며 지역문화재단 설립이 가속화되며, 특히 2014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역문화진흥법의 영향으로 현재는 지역문화재단 설립이 유행처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지역문화재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현장의 정책제언에 의해 끊임없이 논의가 이어졌으며, 지역문화진흥법 시행과 함께 법률상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이 규정되었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15)에도 지역문화 진흥의 핵심 주체로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강화를 계획에 포함시켰다. 무릇 지역문화정책 수립 및 실행에 있어 지역문화재단 주도의 시대가 열린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상황은 여전히 녹록치 않다. 지역문화재단을 둘러싼 거버넌스의 주체 간 역할에 대한 합의가 명확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역문화시행계획에 따른 시도 문화재단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

기보다는 ‘지역문화진흥법 법률상 규정된 역할을 왜 제대로 수행되지 못 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그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2.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규정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는 지역의 문화정책 수립과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지역문화재단 설립 및 기능 강화를 명확히 하고 있다. 즉, 지역문화 진흥의 핵심 주체인 지역문화재단의 역량강화를 위해 정책적 위상과 실질적 기능 강화를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회의에서는 지역문화진흥법의 시행령(안) 제정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역문화재단의 역할규정을 요구하였고, 이는 실제로 시도 문화재단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역할을 법률에 제대로 명시 해줄 것을 건의한 것이다. 즉, 지역문화진흥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지역문화재단의 위상제고 및 역할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인식의 전환을 위해 명확한 역할 규정이 필요한 것이었다.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회의에서 제언한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지역문화재단의 당해 지역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추진·지원
2.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3. 지역문화진행시행계획 등을 포함한 지역문화 관련 정책개발과 자문
4. 지역문화인력 양성 및 지원
5. 생활문화 관련 사업추진 및 활동 지원
6.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지원
7.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8.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사업의 추진 및 지원
9. 지역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사업 및 지원
10. 지역 문화복지에 관한 사업 및 지원
11. 지역의 문화시설에 대한 시설운용 및 관리
12. 지역문화의 매개 및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업무
1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러한 정책 건의, 아니 실제 시도 문화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그대로 명시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21조에서는 지역문화재단의 사업 범위(역할)로 아래의 다섯 가지 조항만으로 확정하여 시행령이 발휘되었다.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현재, 각 지자체와 지역문화재단간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관련하여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 지자체는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의 중요성을 다소 간과한 측면이 있는데, 계획수립을 일반적인 행정 절차행위로 인식하고 있다.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회의 차원에서 요구했던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등을 포함한 지역문화 관련 정책개발과 자문” 조항이 지역문화진흥 시행령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 3. 지역문화재단 Catch-22

지역문화재단의 역할과 기능강화에 대한 논의 그 자체가 최근 더욱 무의미해지는 것은 지역문화재단이 처한 ‘역할’과 ‘운영’에 있어 진퇴양난의 상황, 즉 모순된 규칙에 꼭 묶인 상태인 catch-22<sup>1)</sup>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 지역문화재단은 역할 및 사업에 있어 모범이 생기게 되었다. 특히, 그동안 법률상 근거 없이 조례에 의해 설립되던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재단은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또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립한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2015)에 의하면 지역의 문화정책 수립과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및 기능 강화를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문화 사업의 문제점으로 자율적·지속적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행정은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관주도의 사업추진, 하향식 정책 추진, 단기적 성과 지향, 하향식 예산지원을 행정(문체부)은 스스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1) 조셉 헬리라는 소설가가 쓴 반전 소설의 제목인데, 소설에서 catch-22는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수칙을 말한다. 그런데 이 수칙이 현실과 마주쳤을 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다. 여기서 착안하여 catch-22는 ‘진퇴양난, 모순’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기본적으로 관료주의적 행정에 대한 비판이 녹아져 있다.

있는 것이다. 일견 자율성을 전제로 지역문화재단 운영과 역할수행이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수행에 근간이 되는 자율성이 2014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지역문화진흥법이 진흥법의 취지에 맞게 임의규정이 많다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관리·감독을 위한 강행규정이 많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역문화재단의 자율적 사업 운영의 근간이 되는 조직운영은 동법률이 강한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동법의 제25조 지도·감독, 제26조 검사·보고, 제27조 운영지침의 통보, 제28조 경영실적의 평가는 지역문화재단의 통제와 관리를 법률적으로 명시하고 있다.<sup>2)</sup>

행정과 거리를 둔 전문적, 자율적 운영이 필요했기에 재단이 설립된 것임을 행정(문화체육관광부)은 인정하면서도, 자율적 운영의 근간이 되는 조직운영에 있어서는 여전히 입을 대기 위한 강력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 역시 행정(안전행정부)인 것이다. 일선 문화예술계 현장에서는 지역문화재단에 “공무원 행정과 다른 행정절차 간소화, 유연한 행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반면, 행정은 재단에 국가 및 지자체의 행정절차 준수를 법률과 각종 지침으로 통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문화재단 Catch-22인 것이다.

#### 4. 정책개발과 사업집행의 이원화 문제

왜 지역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을 주도하지 못하는가? 현재 시도 문화재단은 국가 및 지자체 문화정책 사업대행의 제한된 운영과 행정 대체형 산하기관으로 전락하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시도 문화재단은 법에서 규정한 본질적인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행정은 재단을 정책 사업대행기관의 필요성에 의해 재단의 역할을 규정시키는 것이다. 즉, 정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조직으로 행정 대체형 산하기관으로 시도 문화재단을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 정책사업 대행이 주된 역할이라면, 반드시 시도 문화재단에 사업을 위탁하는 것만이 대안이 아닌 민간위탁 등 다른 대안들도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문화바우처 사업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지역문화정책의 흐름은 민간주도,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지역의 문화정책을 제언, 개발하는 지역문화 싱크탱크로서 시도 문화재단의 새로운 역할이 일선 현장에서 부

2)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공무원 파견, 업무감사 등의 통제를 받아 왔으나, 동법은 지자체장의 지도·감독을 명문화하였으며, 행정자치부장관은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예산의 편성·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전문가 집단의 문화재단이 정책적 역할을 주도하지 못하고 문화예술 비전문가인 행정에 의해 지역문화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정책과 사업의 이원화로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다.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지역문화재단이 법률에서 규정한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정책 개발 및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문화사업이 전개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도 문화재단은 지역문화를 선도하는 정책적 기능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지자체가 주도하고 재단이 지원’하는 현 구조에서 과감히 ‘시도 문화재단이 지역문화 정책을 주도하고, 지자체는 지원’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국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정책 기능은 문화의 비전문가인 행정의 역할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 문화정책을 의사결정(decision making)과 예산편성과 분배(budget preparation & allocation)으로 한정시킨 결과이다. 이러한 인식이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에서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을 ‘지역문화정책 제언 및 지원’으로 규정해버린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재단을 최초 설립 할 때는 종합적인 문화행정의 수단으로서 정책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설립하는 취지를 보여주나,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가의 문화사업의 전문적,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 관리운영만을 염두 해 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현재 시도 문화재단이 문화정책 기능의 부재로 생기는 문제점은 ‘지역문화진흥의 거점역할 실패’, ‘전문성과 현장성 있는 지역문화정책 수립 불가능’, ‘문화정책과 문화사업의 이원화로 인한 재단의 자율성 저해’를 들 수 있다. 지자체의 의사결정(decision making)과 예산편성과 분배(budget preparation & allocation) 고유권한으로 인해 문화정책수립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문화사업은 지역문화재단의 업무로 인식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정책과 사업의 이원화로 인해 결국 지역문화재단은 시의 산하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실제로 시행한 문화사업을 통해 구체적인 문화정책적 실천방안이 도출되기도 하므로 문화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것 또한 그 자체로서의 의미가 충분히 있다. 그러나 시행 혹은 집행형 업무에 압도되어 재단이 문화정책의 큰 흐름과 관련된 고민을 하지 않거나 못한다면, 이는 단지 시 사업의 용역기관으로서의 재단으로 그 입지를 자리매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시도 문화재단은 해당 지자체의 문화예술정책과 문화생태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 하여야 한다. 또한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 문화행정가들과의 교류를 바탕으로 발전적인 문화정책을 만들어 나아가는 작업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의 정책입안자들, 각 지역문화재단의 전문행정가들, 예술단체 및 협회들의 비전과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재단의 고유한 정책개발을 통하여 뚜렷한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문화예술 전문가 및 관계자들은 대체로 지역문화재단의 역할로 ‘지역문화진흥 사업대행’이 아닌 ‘지역문화 정책개발’이라는 점에 그 역할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즉, 지역문화재단은 지역의 문화정책개발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의 거점 역할을 하며, 수립된 문화정책을 문화사업과 일원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정책개발은 궁극적으로 지역문화재단이 지역 문화예술에 관련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게 되는 것이다.

## 5. 열악한 재정구조로 인한 의사결정의 거버넌트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회의 일반현황(2015년 1월 기준)에 의하면 13개 시도 문화재단의 2015년 예산 총액은 3,069.2억원(2014년 총 2,829억원 대비 약 240억원 증액), 기관 당 평균 236.1억원(전년 218억원 대비 약 18억 증액)이다. 이 중 자체 충당 비율은 평균은 16% 수준으로 2014년도 19.6% 대비 3.6%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13개 시도문화재단의 예산은 대부분 지자체로부터 출연(15.4%) 또는 위탁(32.7%)되거나, 국비지원금(35.9%)이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자체 출연금이 위탁으로 전환되었고<sup>3)</sup>,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초문화재단의 경우 대부분 지자체의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광역 시도 문화재단의 전체 평균 출연금은 15.4%에 불과하다. 지역문화재단의 주요 재정 출처인 지자체 출연금, 지자체 위탁사업비, 국비의 3가지로 크게 분석해보면, 국비 사업이 가장 많은 평균 35.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가 문화예술의 주요 정책사업인 문화예술지원사업, 문화나눔, 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을 지역문화재단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인데, 국가의 지역문화재단 예산 부담률이 지자체와 비슷하며, 최근 설립된 재단을 중심으로 재정이 국비 사업에 종속되는 경향가짐 점 나타나기 시작한다. 재정적 관점에서 지역문화재단은 지역의 고유성과 특수성에 기반 한 재단 운영 보다는 국가 주요 정책사업의 대행기관이 되고 있다.

13개 모든 시도 문화재단이 지자체 출연금 보다는 위탁사업비의 비율이 더 높은데, 이로 인해 지역문화재단은 지자체의 위탁사업 산하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 위탁사업비 위주의 재

3) 최근 경기도의회가 경기문화재단 출연금을 보조금 형식으로 전환하고자함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사업별 예산을 출연금이라는 하나의 예산항목으로 지원해왔던 것을 사업별로 예산을 분석해 도가 보조금 형태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바꾸었다. 인건비나 사무보조비 등 기존의 운영비의 경우 출연금 형태로 지원해 각 산하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신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항목을 명기하고 외부 지원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경우 활용하는 ‘민간경상보조금’의 형태로 예산을 지급, 민간단체와 마찬가지로 사후정산을 실시하도록 했다.

- 경기일보 2015.01.06자 기사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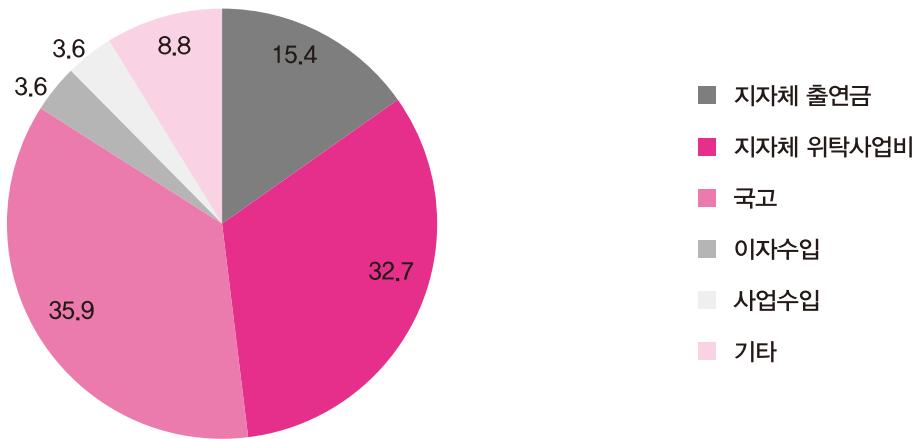
단운영으로 인해 지자체와 재단의 관계는 수직적 상하관계, 의사결정의 상의하달형 관계가 되고 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출연금으로 교부하는 것 보다 위탁사업비 교부를 통해 더욱 재단의 통제와 관리·감독이 용이해 진다. 현재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위탁사업들은 재단의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과 지역문화진흥법에 명시한 지역문화재단의 고유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위탁사업을 선호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책(policy)은 누가 의사결정(Decision Making)을 하는 것이며, 의사결정은 결국 누가 재정(Who's got the money?)을 부담 하는가에 달려 있다. 예산 결정권을 가진 지자체가 재단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하며, 사업, 재정, 조직면에서 행정주도가 강한 경향으로 재단의 자율적, 독립적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財物이 모인 단체인 재단(財團)이 사실상 財物 없는 구조가 되어 버리며, 재물을 채워주는 곳간의 열쇠를 지자체가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재정적 관점으로 인해 결국 지역문화재단은 지자체의 하부기관, 산하기관, 사업대행기관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시도 문화재단은 결국 재단법인 OO문화사업단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문화시행계획에 따른 시도 문화재단의 역할 ●

재단	2015년 예산 현황									
	의존수입				자체수입				2015년 총액 (①~⑥ 합계) 비고	
	①지자체 출연금		② 지자체 위탁 사업비	③ 국고 (국비, 위원회, 진흥원 등)	④ 이자 수입	⑤ 사업 수입	⑥ 기타			
기본 재산	사업비	경상비	계							
강원	—	12	—	12	34	46	5	30	15	142
경기	—	—	151	151	175	180	32	66	25	629
경남	—	7	12	19	40	102	3	—	6	170
광주	5	—	28	33	82	68	2	2	0	187
대구	—	—	5.5	5.5	106.6	42.8	5.1	—	8.7	168.7
대전	—	25	16	41	49	37	2	—	12	141
부산	20	—	17	37	185	36	7	0.1	10.9	276
서울	—	104	—	104	162	207	27	6	153	659
인천	—	8	—	8	63	64	14	1	6	156
전남	—	—	23	23	32	93	0.5	5	10	163.5
제주	—	—	4	4	28	37	7	—	20	96
충남	—	—	16	16	30	96	—	—	3	145
충북	12	—	5.7	17.7	17	93.3	7.3	—	0.7	136
합계	37	156	278.2	471.2	1,003.6	1,102.1	111.9	110.1	270.3	3,069.2
평균	—	—	—	36.2	77.2	84.8	8.6	8.5	20.8	236.1
비중	—	—	—	15.4	32.7	35.9	3.6	3.6	8.8	100.0

〈표1〉 시도 문화재단 예산현황(2015년 1월 기준,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회의 일반현황 참조)



〈그림 1〉 시도 문화재단 예산 유형별 비율

## 6. 지역문화재단 역할 수행을 위한 선결과제

### 1) 행정과 재단의 협력적 수평관계를 위한 신사협정을 체결하자.

지역문화재단은 그동안 행정과 재단의 관계에 있어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행정과 문화예술의 본질적인 미스매치 관계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행정의 특성은 규범적, 공평성, 대중성, 실적, 관례주의, 일상성인데 반해, 문화예술은 개성, 자유, 비타협, 비대중성, 다면적평가, 비일상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과 문화예술의 본질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역 문화예술진흥이라는 공통적인 목표를 위해 행정과 재단은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협동적 관계라는 파트너쉽을 구성해야 한다.

명확한 역할 분담과 협동적 관계라는 파트너쉽의 첫 번째 단계로 사업 위탁에 대한 명확한 관계정립이 필요하다. 그동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의 문화예술 진흥의 사업 운영을 지역문화재단에 위탁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위탁관계는 기존의 거버넌트형으로 행정의 일방적인 상의하달형 구조였다. 지역문화재단의 행정과 재단의 문화예술 사업에 관한 위탁계약관계는 거버넌스형으로 전환이 요구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사업 운영을 전문적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재단에 지원한다는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며, 이러한 인식과 통치구조의 거버넌스형 전환은 수위탁관계를 협력적수평관계, 평면형관계, 네트워크형, 대등협동형 관계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다양한 시민 문화예술 지원사업, 문화정책수립, 문화예술 연구·조사 등에 관한 명확한 업무 및 역할

분담에 대한 수평적 협의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협의에 의해 결정된 지역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진흥 사업에 대해서는 그 전문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며, 재단은 책임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업무 및 역할분담을 위한 협약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객관적 평가가 가능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공익법인제도 개혁<sup>1)</sup>과 지정관리자제도<sup>2)</sup> 도입으로 인해 행정과 재단의 이러한 명확한 역할 분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인사와 재정의 관점에서 지자체와 재단의 합의는 필수 불가결이라 할 수 있다. 지역문화재단을 경영적으로 자립시키기 위해, 조직의 자립, 운영수법의 자립(독립한 매니지먼트 체계의 정비), 의사결정권의 위양 등의 환경이 정비되고 있다. 이러한 재단개혁에 대해서는 물론 재단 자체의 노력이 전제가 되나, 의사결정권을 가지지 않은 재단 자신만의 자조노력으로는 곤란한 부분이 있어, 출자 지자체와의 콘센서스와 지도력이 개혁에 불가결하다. 예컨대 요코하마시와 요코하마예술진흥재단은 협력적 수평관계를 위해 상호간 신사협정(?)을 통해 재단의 사업, 재정, 인사, 운영 등에 명확히 하고 있다. 구체적인 협약내용은 여섯 개의 조항으로 하며 3년 주기로 세부사항이 바뀌는데, 그 내용은 <표2>와 같다.

재단과 지자체간의 협약이 이루어지면, 지자체는 재단의 사업, 재정, 인사에 자율성과 독립적 운영을 철저히 보장한다. 3년 후 협약사항의 평가는 재단에서 먼저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지자체는 재단의 자체평가를 바탕으로 행정평가를 한다. 재단 자체 평가와 지자체의 행정평가는 외부전문가에 의뢰하여 검증을 받게 된다. 행정은 최종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협약 준수사항을 검토한다. 종합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3년간의 새로운 협약사항을 재단과 지자체는 합의에 의해 다시 결정하는 Plan-Do-Check-Action의 정책 사이클이 작동한다. 국내 지역문화재단에 요코하마시와 재단의 협약관계는 수평적 협력관계를 위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 민간 비영리부문을 사회경제 시스템 안에 적극적으로 자리매김 시키기 위해 공익목적사업(학술, 기예, 자선 그 외 공익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은 공익재단법인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대다수의 지역문화재단은 2009년 이래 공익재단법인으로 법적위치를 전환하게 된다.

2)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지방공공단체의 출자법인 등 일부 단체의 제한으로 부터 소위 "제3섹터"가 아닌 순수 민간주식회사도 관리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공공 문화시설 운영의 ① 공평성 ② 효율성 ③ 경제성 ④ 안정성을 목적으로 문야분야에도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협약사항(2008~2010)	협약사항(2011~2013)
1. 「문화예술의 창조성을 살린 지역 만들기 사업」을 확대해 총 72건의 사업 실시한다.	1. 재단운영 시설의 이용자수를 250만명으로 한다.
2. 「어린이의 창조성을 기르기 위한 사업」, 「신진 예술가를 지원하는 사업」등의 참가자수를 15만명으로 한다.	2. 지역의 시민참여 협동사업을 확대하여, 참가자수를 10만명 이상으로 한다.
3. 재단 홈페이지의 총 액세스 건수를 1100만 건으로 함과 동시에, 홈페이지 시민 의견 등의 접수 건수를 600건으로 한다.	3. 어린이 대상 사업의 참가자 수를 늘려, 12만 1천명 이상으로 한다.
4. 예술문화시설의 이용자 만족도를 4.0(5점 만점)으로 한다.	4. 예술문화관련 국제교류사업을 확대시, 25개 사업 이상으로 한다.
5. 재단의 사업 수입 및 그 관련 수입의 증가를 피해 자기수입 비율(재정자립도)을 30%이상으로 한다.	5. 재단의 사업 수입 및 그 관련 수입의 증가를 피해 자기수입 비율(재정자립도)을 37% 이상으로 한다.
6. 직원의 동기부여를 위해 능력·역할·직무·직책에 상응한 인사·급여 제도를 고친다.	6. 직원의 의욕, 능력, 실적의 적절한 평가를 실행하기 위해 인재육성의 일환으로 인사평가제도를 도입한다.

〈표 2〉 요코하마시와 요코하마예술진흥재단의 협약사항

## 2) 국가와 지자체는 법의 취지에 맞는 지원을 하자

현재 시도 문화재단의 국가, 지자체 위탁사업의 경우 사업의 집행에 드는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등은 보조 받고 있으나,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는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위탁사업으로 인한 조직 불안정(비정규직 고용불안 및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업 대행 수수료를 지원받아 이를 재단의 경상경비에 포함시킨다면 사업 계약직의 처우개선에 있어 일정부분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다. 그동안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회의 실무회의를 통해서도 이러한 논의는 여러 차례 있었고, 이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개선방안이 필요한 시점인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동법 시행령 16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기관에 1.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附帶) 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에 보장된 사항인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를 지자체,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

요가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인정한 지역문화재단의 사업을 이제는 더 이상 지자체로부터 위탁의 형태가 아닌 재단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고유목적 사업 수행을 위한 출연금으로 받는 것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법적 근거를 마련한 지역문화재단의 위상제고 및 역할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 3) 지자체는 안정적 예산확보를 위한 총액예산제도를 도입하자

지역문화재단이 재단설립의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 재단의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결국 재정의 자립이 필수적이다. 재단의 독립성과 적정운영은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와 독립채산, 즉 자립이 전제조건인 것이다. 그러나 현 상황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 예산 삭감, 재정의 건전성 등의 환경변화에 직면해 있으며, 재정 및 예산의 효율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대부분의 시도 문화재단은 출연금보다는 위탁사업비의 비율이 높아 재단과 행정간 예산 및 운영을 둘러싼 갈등의 폭이 깊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매년 지자체와 재단은 예산 수립 및 확정을 위해 지자체는 될 수 있으면 예산 삭감, 반대로 재단은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절차가 연례적으로 반복된다. 이 과정에서 결국 행정의 요구대로 예산이 확정되는 것이 문화재단의 일반적인 관례이며, 재단에 꼭 필요한 운영, 관리, 사업의 예산이 삭감, 누락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역문화재단의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지자체의 적정한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한 명확한 지원방침과 함께, 지역문화재단은 지자체와의 합의를 통한 총액예산제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전체예산 중 재단운영의 적정 예산을 퍼센티지(%)로 산정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재단에 출연금 형태로 배부하게 된다. 물론 현재 지자체 위탁사업 역시 재단의 고유 목적사업으로 확정하여, 전체 예산을 출연금 형태로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 지자체로부터 총액예산으로 출연 받은 지역문화재단은 재단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재정운영의 자율성은 결국 전체적으로 재단 전체 조직운영의 독립성과 사업운영의 자율성에 바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총액예산제도는 문화재단이 설립된 본질적인 역할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재정 및 예산운용의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단과의 합의를 통하여 지자체 전체예산 대비 재단의 적정 출연금과 위탁사업비를 재단의 전체 출연금 비율로 산정하여 총액예산제도로 지원하며, 그 부족분은 문화재단 자체적으로 재원조성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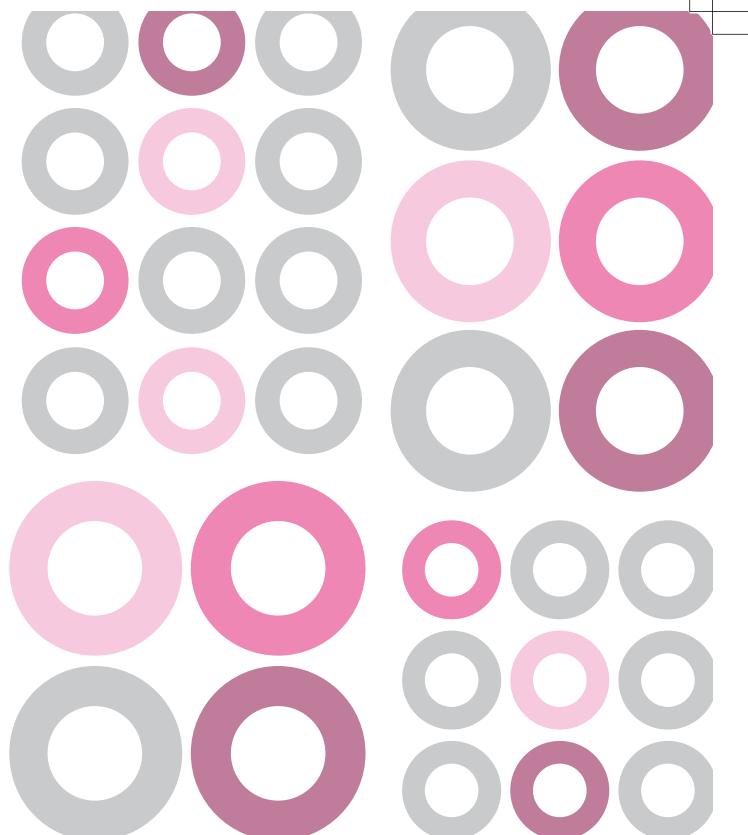
## 7. 맺으며

시도 문화재단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 및 지자체와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협정을 통해 재단 자체의 미션과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국가 및 지자체의 문화정책과 능동적으로 연계 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제는 재단과 행정이 한 테이블에 앉아 진지하게 고민하고 명확한 역할분담을 위한 소통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국가 및 지자체 정책사업 대행기관으로 전락한 시도 문화재단의 역할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 및 제도적 개선방안은 각 개별 지역문화재단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정책결정에 있어 문화재단의 전문성보다는 국가 및 지자체의 행정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경험하였다. 행정의 권위만이 정책 수립 및 결정에 영향을 미칠 뿐이다. 이제는 지역문화재단 간 네트워크형 거버넌스 체제를 통해 산재한 정책과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회의,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차원의 연대와 결속을 통해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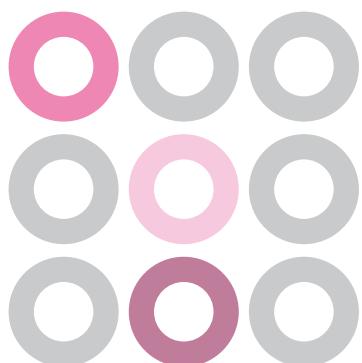
## 【참고문헌】

- 조정윤 (2009) 『예술경영연구 제15집, 일본의 공립문화시설의 환경변화와 운영제안 – 재단법인 운영주체를 중심으로』, (사)한국예술경영학회
- (재)마포문화재단(2011) 『마포문화재단 중장기 발전 전략 보고서』
- 조정윤(2011) 『일본 지역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박사논문
- (사)한국문화정책연구소(2012) 『지역문화재단의 역할과 과제 – 서울지역 문화예술회관의 고유 역할과 운영 방향성에 관한 연구 –』
- 문화체육관광부(2014) 『지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매뉴얼』
- 문화체육관광부(2015)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회의(2015)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회의-일반현황』
- 요코하마시예술진흥재단(·浜市芸術文化振興財·) <http://p.yafjp.org/jp>
- 미토예술관(水·芸術館) <http://arttowermito.or.jp>



## 참 고 자 료

- 지역문화진흥법
-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0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2014.7.29.] [법률 제12354호, 2014.1.28., 제정]

문화체육관광부(지역전통문화과) 044-203-2557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 “문화지구”란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 기획·개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6.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시행계획 및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장 지역의 생활문화진흥

#### 제7조(생활문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9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 ③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지역의 문화진흥기반 구축

### 제10조(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문화진흥 관련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지역문화실태조사)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 현황 등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활동 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간 및 지역과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협력에 필요한 각종의 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 제13조(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 대학을 비롯한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등을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장 문화도시·문화지구의 지정 및 지원

#### 제14조(문화도시심의위원회 설치)

- ①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심의 및 추진실적 심사
  2.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정된 문화도시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심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문화도시의 지정)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문화적·역사적 정체성, 창조성, 예술성 등 문화도시로서의 기초여건을 토대로 시·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지정 희망년도 2년 전까지 지정을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제3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 문화도시 지정 분야별 특성화 계획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이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과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문화도시의 지정 취소)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도시로 지정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받은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 지정된 문화도시가 지역여건 등 환경변화에 의하여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 ② 그 밖에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도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8조(문화지구의 지정·관리)

- ①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골동품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2. 특성화된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개최되는 지역
  3. 그 밖에 유형·무형의 문화자원이나 문화적 특성 보존을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지구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대도시 시장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문화지구의 유지·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그 밖에 문화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문화지구관리계획에 따라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장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등

###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 ②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20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1조(지역문화진흥 재정의 확충)

-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 재정의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재정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2조(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용·관리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용도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6장 보칙

###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지역문화진흥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장 벌칙

### 제24조(과태료)

- ① 제18조제3항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제12354호, 2014.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지방문화예술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 ① 이 법 시행 전에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문화예술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위원회로 보고,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은 이 법에 따른 지역문화재단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전에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은 이 법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보되, 이 법 시행 전에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6호 중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36조 중 “위원회·지방문화예술위원회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재단법인은 지방문화예술을”을 “위원회,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역문화예술을”로 한다.

- ②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3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에 따른 지방문화예술위원회를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위원회”로 한다.

-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9조제3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예술위원회”를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위원회”로 한다.

- ④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문화지구”를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지구”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0 ○●

## I. 목표 및 추진과제

비전

문화로 행복한 지역창조

추진  
목표

지속기능한 지역문화 기반 구축  
(문화 동호회 참여율 '14년: 4.2% → '19년: 7%)

지역문화 균형발전 토대 마련  
(문화기반시설 '14년: 2,515개소 → '19년: 3,375개소)

문화를 통한 지역가치 창출  
(문화도시 · 문화마을 '14년: 3개소 → '19년: 50개소)

### ■ 지역문화 추진체계 정비

중점  
추진  
과제

지역문화  
역량강화

-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 생활문화 진흥
-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지역문화  
격차해소

- 맞춤형 문화기반 조성
- 문화접근성 향상
- 문화재원 확충 및 다각화

지역문화  
발굴창조

-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 지역문화 가치 발굴
- 지역문화브랜드 세계화 추진

사람중심

지역중심

과정중심



## II. 중점 추진과제

### 1 지역문화 역량강화

- 지역문화 기틀을 마련하는 핵심 요소인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과 지원
- 협력과 상생의 주민 공감대 형성과 생활문화의 진흥을 통한 삶의 질 제고
-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지역문화생태계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 기반 조성

#### 1-1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 ◆ 필요성

- 지역 스스로의 지역문화역량 강화 및 발전
- 협력적 · 상생적 주민 공감대 구축

##### ◆ 추진방향

- 자발적인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사람 중심의 발전 토대 마련
- 지역문화인력의 발굴 · 육성을 위한 종합적 인력양성 체계 구축

##### ◆ 사업내용

-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 지역문화 전문인력 현업종사 지원
- 지역문화 전문인력 종합인적자원 관리체계 마련

#### 1-1- 1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 지원

##### 〈사업추진 방향〉

- 지역문화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기획 · 개발 · 평가 등을 담당할 인력 양성
  - 지역에 생활기반을 두고, 지역문화현장에서 활동할 인력
  - 문화경험이 있는 사람에 대한 지역문화기획 등의 능력 배양 우선
  - 교육과정의 융합 및 프로젝트형 교육 중심
- \* “지역문화 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 기획 · 개발 ·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함(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제8항)

- 
- 대상 : 대학, 문화진흥 관련 연구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 2년간 지원
    - '15년도 권역별 5개소 → '18년도 광역별 16개소
    - 현장 학습을 포함한 5개월 이상의 교육과정 운영
    - 지정기관에 대하여는 강사료, 실습비 등 국비 지원

#### ○ 지역문화 청년인력 발굴 지원

- 지역문화 '청년창직'컨설팅(3년/컨설팅 지원단 설치 운영) 및 사업자간 네트워크 형성 지원
  - \* 청년창직 : 대구 중구 삼덕상회, 장거살롱, 전주남부시장 청년몰, 이태원 계단장 등 창조적이고 다양한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 발굴
- 청년인턴제도 시행으로 지역문화 전문가의 도제식 교육 연계·지원

#### ○ 문화귀촌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 문화귀촌 희망자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 및 초기 정착금 지원
-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등과 연계, 귀촌(歸村) 예술인 마을 조성

#### ○ 지역문화 창조인력\*의 지역문화 활동 연계 강화

- 지역문화예술 기획·창작, 유통·산업화 등 유형별 인력 양성 및 지원체계 마련
  - \* “지역문화 창조인력”이란 지역문화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지역 예술인력, 지역 문화산업 종사자, 시민 등 지역문화를 창조하는 다양한 유형의 인력을 총칭

#### ○ 지역문화 지도자 대상 인식 전환교육 실시

- 지방행정연수원 등에 지역문화과정을 신설, 지역문화 지도자 및 오피니언 리더 대상 교육

### 1-1- [2] 지역문화 전문인력 현업종사 지원

#### ○ 지역문화 기획평가인력 운용

- 지역문화 전문인력을 기획평가사업 현장 모니터 요원으로 채용하여 사업의 기획, 평가, 환류에 직접 참여토록 추진
  - \* 예) 매월 활동 인건비 지급(3년 계약)



### ○ 지역문화 사업·기관과의 연계

- 정부·지자체의 지역문화관련 사업에 적극 활용
- 생활문화센터 상근 전문 인력 채용 시 사업비 지원, 가점 부여 추진 등

## 1-1- [3] 지역문화 전문인력 종합인적자원 관리체계 마련

### ○ '지역문화인적자원센터' 설립

- 국가 차원의 종합적 지역문화 인적자원 관리체계 구축
  - \* 사례) 캐나다 문화인적자원위원회(Cultural Human Resources Council, CHRC)
- 지역문화 전문인력 DB 구축,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과 재능경로제도 (Talent Pathway Scheme) 도입
- 분야별·경력별·생애별 경력관리·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근로환경 실태조사, 복리후생 체계 마련 등 환경 개선 정책 추진

### ○ 지역문화인력 직종 개발 및 인증제(등록제) 도입

- 문화기획자, 문화매개자 등 지역문화전문분야 직종 개발
- 지역문화 전문인력(문화여가사 등 포함) 자격증 제도 도입 검토
  - \* 기존 문화인력관련 자격증(학예사, 문화예술교육사 등)과 연계

## 1-2 생활문화 진흥

### ◆ 필요성

- 생활문화의 진흥 및 정착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

### ◆ 추진방향

- 지역생활과 밀착한 풀뿌리 지역문화 확산 및 진흥
- 가정, 직장, 마을 등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생활문화 활성화

### ◆ 사업내용

- 생활문화 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 생활문화공동체 형성 및 활동 지원
-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

---

## 1-2- 1 생활문화 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 ○ 생활문화 거점인 '생활문화센터' 조성

- 유휴시설의 리모델링을 통한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조성(매년 30개 규모)
  - 동호회 연습 공간, 세미나실, 작은 도서관, 다목적 홀 등
- 2015년도 31여 개소 조성 추진(135억원)
- 운영컨설팅 및 생활문화아카데미 운영\* 등 활성화프로그램 제공
  - \* 커리큘럼 구성, 권역별 아카데미, 통합워크숍 개최
- 생활문화시설\*의 운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경우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지원 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 ○ 문화기반시설의 생활문화시설 기능 강화

- 국·공립 문화공간을 주민문화공간으로 활성화
  - \* 국가(공기업 포함)소유 유휴공간에 대한 전수 조사 추진 및 관련 정보 제공
-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마을회관 등의 생활문화 프로그램 지원

### ○ 지역문화 패스제 \* 도입 및 지역문화 zone \*\* 설치

- \* 일정 지역의 문화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
- \*\* 특정 지역을 지역문화구역으로 설정, 지역문화 활성화 도모

### ○ 민간 여가시설 (서점, 카페, 식당 등)의 공공 공간화 추진

- 주민활동 공간 제공 조건, 최소한의 비용 지원
  - \* 지원 대상 민간 여가시설 : "Thanks Books"  
(홍대 앞 동네서점,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공간으로 활성화)

## 1-2- 2 생활문화공동체 형성 및 활동 지원

### ○ 주민 주도 자생적 생활문화 형성 및 활성화 지원

- 마을회관,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 등의 생활문화 공간화 지원
- 주민 주도 생활문화 커뮤니티 공간의 관리비(전기, 가스 등), 세제 혜택 지원 추진
- 마을미술 프로젝트, 공동체 연극·영화 등 자생적 커뮤니티아트(Community Art) 활동 지원
  - \* 생활문화시설 : 문화시설,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 지역자치센터, 마을회관, 생활문화센터, 영상미디어센터, 지역미디어시설, 지역문화예술창작공간



### ○ 문화취약지역 생활문화공동체 형성 지원

- 임대아파트단지, 농산어촌 등 문화취약지역 주민대상
- 문화예술 활동을 매개로 한 공동체 형성 지원(단체 당 최대 3년 지원)
- 이주 외국인 대상 생활문화공동체 사업 추진

### ○ 생활문화참여 확산을 위한 동호회 지원 확대

- 추진협의체 구성,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운영 관련 지원 체계화
  - 강사 파견 및 생활문화협의회 등 협력네트워크 지원
  - ‘1인 1 생활문화 활동 갖기’ 캠페인 추진
  - 생활문화제 개최 지원 등 발표와 교류의 장 활성화
- \* 17개 시·도 및 전국 단위 생활문화제 개최 (지역문화 전문인력 및 지역 생활문화동호회가 축제 기획·운영 전반에 참여)

### ○ 학생(초·중·고)층 생활문화 수요층 편입 추진

-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와 연계, 청소년층의 생활문화 활동 강화
- 대학 등 학교 내 동아리활동 적극 유도, 학내 동아리와 지역사회와 협력 프로그램 지원

## 1-2- ③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

### ○ 문화자원봉사 국민 인식 제고

- 문화자원봉사 캠페인 및 전국 대회 개최

### ○ 온라인 문화자원봉사매칭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 봉사일감 실시간 매칭 및 실적 관리를 위한 문화자원봉사 매칭시스템 구축('14년 오픈)
- 유사 시스템 통합·연계 및 생활문화센터 등 문화시설(수요처) 연계, 청소년·외국인 등 회원가입 대상 확대
- 주요 문화시설 이용 할인, 우수 봉사자·봉사단 표창 수여

## ▶문화체육자원봉사 매칭시스템 개요 (<http://csv.culture.go.kr>)



일반인 대상 오픈	‘14.12.22~
구성	봉사일감 매칭, 봉사실적 승인·관리, 커뮤니티 운영·정보 제공 등
추진 체계	문화예술위원회 총괄 운영본부, 전국 229 개 문화원 및 228개 생활체육회가 시군구 지원센터로 지원

### ○ 문화시설의 문화자원봉사 운영 전문성 확대

- 시설별 업무특성에 따른 운영관리 매뉴얼 제작·보급
- 지역지원센터(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생활문화센터 내) 운영

### ○ 은퇴자들의 재능나눔형 문화자원봉사 활동 지원

- 문화자원봉사를 사회공헌 일자리 및 여가활동으로 적극 활용
- 인문정신, 문화예술, 대중예술 등 분야별 재능나눔형 문화자원봉사

- 은퇴한 석학·언론인·문화계 인사 등이 참여한 “인생나눔교실” 운영
- 문화예술 명예교사 위촉, 체험형·소통형 교육봉사프로그램 운영
- 원로 대중예술인들이 참여한 “복고클럽 문화봉사단” 운영



### 1-3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 ◆ 필요성

- 지역자체의 역량강화를 통한 종합적·유기적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 기반조성 추진 필요

#### ◆ 추진방향

- 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지역 활성화로 이어지는 지역문화생태계조성
- 장소성에 기반한 지역문화자원의 통합적 활용체계 구축

#### ◆ 사업내용

- 지역문화진흥관련 법·제도의 정비
- 지역문화 현황 조사를 통한 지역문화 실태 파악
- 도시 및 지역의 통합적 문화계획 수립
-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역문화사업 지원
- 지역문화 주체 역량 강화

### 1-3- 1 지역문화진흥관련 법·제도의 정비

- 지역문화 진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 법 정비
  - 지역문화현장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법 조항의 보완 및 구체화
  - 지역문화재정 확충 등 실질적 지원 관련 조항 지속 보완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 지역현실에 맞는 기본 조례(안) 마련
- 지역의 품격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지역 중심 행정 강화
  - 법령 용어 개정(지방→지역) : 지방자치법 등 약 100여개 법령 대상

### 1-3- 2 지역문화 기초현황 조사 및 지표 개발

- 지역문화 현황 조사를 통한 지역문화 실태 파악
  - 문화자원, 문화활동 등 지역문화 세부실태조사(2~3년 단위)
  - 문화격차를 포함한 지역문화 현황조사, 문화통계 확대 실시

\* 문화향수 실태조사,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등 기존의 양적 기초조사를 보완,  
지역문화현황을 심층적으로 파악

○ 삶의 질과 문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문화지표 개발

- 지역문화생태계를 진단할 수 있는 다원적 지역문화생태계 지표 개발 및 평가시스템 구축
- 지역규모 및 유형에 따른 지역행복지표 포함

〈삶의 질 측정지표 사례〉

삶의 질 측정 분야	삶의 질 측정 내용
소득 · 소비	소득, 소비생활, 소득분배를 중심으로 경제자원에 대한 통제력
건강	건강행태, 건강상태, 의료서비스의 질
노동	고용환경과 근무환경 중심
교육	교육기회의 충족도, 교육자원, 교육효과로 구분
주거 · 교통	주택수급, 주거환경과 질, 교통의 질
안전	범죄와 사고, 화재 및 안전을 위한 인프라
가족	가족형성, 가족형태, 아동양육 및 가족관계
환경	환경오염도와 환경투자 중심
사회통합	사회적 포용과 사회자본
문화 · 여가	문화여가 자원(시간 및 비용), 기반시설 및 문화여가 활동

(자료:통계청)

○ 지역사업 추진 시 사전 지역주민 의견 수렴 정례화

**1-3- 3 도시 및 지역의 통합적 문화계획 수립**

○ 지역발전계획 수립 시 문화 분야 포함

- 문화계획 반영 방안 연구, 유형별 가이드라인 개발 보급
  - \*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는 지방정부 문화계획을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 핸드북(Handbook), 매뉴얼(Manual), Toolkit 등을 개발
- 관계부처 MOU체결을 통해 지역문화진흥 협력체계 마련



- 국가 등의 각종 계획과 정책 수립 시 문화영향평가 실시

**〈문화영향 평가제도〉**

- 문화기본법 제5조제4항에 의거 국가와 지자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문화 환경,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
- 2014년도 △도시재생사업 · 행복주택 프로젝트 △문화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폐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 등 4개 대상 사업을 선정 시범사업 실시, 평가지표 방법 등을 보완하여 '15년 본격 시행 예정

- 문화영향평가와 연동하여 지역문화개발사업의 특성화·분권화·자율성을 증진할 수 있는 지표 개발
- 국토 및 지역개발의 문화계획 전문가 참여 확대 추진

### 1-3- 4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역문화사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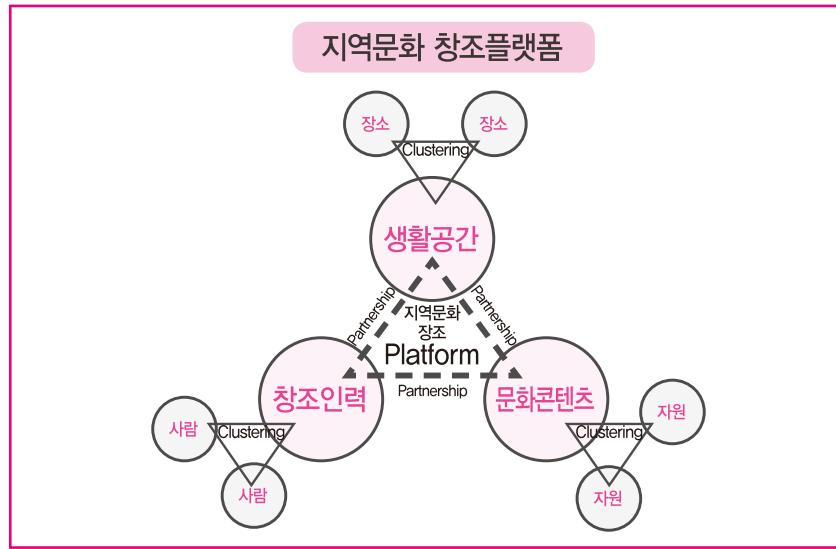
- 지역문화컨설팅 내실화

- 지역문화 정보제공 및 전문적 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센터 운영
- 지역대학, 지역문화재단 등을 지역문화컨설팅 수행기관 또는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으로 지정·운영

- 지역의 공간·인력·콘텐츠가 만나는 ‘창조플랫폼’ 구축

- 지역문화 네트워크와 파트너십, 거버넌스와 과정 설계, 공간·인력·콘텐츠의 클러스터링 등을 지원
- 역할 비중에 따라 공간 중심, 인력 중심, 콘텐츠 중심의 플랫폼 구축, 상호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 거양

\* 사례 : 인천 아트플랫폼(공간 중심), 청년허브(인력 중심)



〈지역문화 창조플랫폼의 3대 클러스터링 모형〉

### 1-3- 5 지역문화주체 역량 강화

- 지역문화 진흥의 핵심 주체인 지역문화재단 역량 강화
  - 지역문화재단 조례 제정, 지침 마련 등을 통해 문화재단의 정책적 위상과 실질적 기능 강화
  - 지역문화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문화재단 사업 확대
  - 지역문화재단의 예산 편성과 사업 집행의 자율성 강화
- 지역문화기관 및 단체 운영의 파트너십 강화
  - 지자체와 지역문화기관간의 정책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수평관계 유지
  - 위탁사업에 대한 사업 수행관련 자율성 확대 추진
- 지역문화기관 간 사업 중복 방지 및 상호 연계 강화
  - 지자체 주도로 기관 간 업무 중복 방지 추진
    - \* 지자체의 기관간 역할 분담 사례 등 확산
  - 상호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 거양
- 주민자치센터를 활용, 지역문화 네트워크 구축
  - 마을 만들기 주도 등 주민들의 문화 활동 확대
  - 문화체험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운영시설, 강사, 교재개발 등 기준 마련



## 2 지역문화 격차해소를 통한 균형발전

- 취약 지역의 문화기반시설 지속적 확충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해 지역별 문화격차·행복격차 해소
- 지역 맞춤형 문화복지 및 문화향유권 확대를 통해 함께 행복한 지역문화 조성

### 2-1 맞춤형 문화기반 조성

#### ◆ 필요성

- 지역별 특화된 문화진흥을 통해 문화격차, 행복격차 해소

#### ◆ 추진방향

- 지역의 정확한 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문화기반 조성
- 새롭고 다양한 문화의 수용이 가능한 유연한 지역문화의 틀 마련

#### ◆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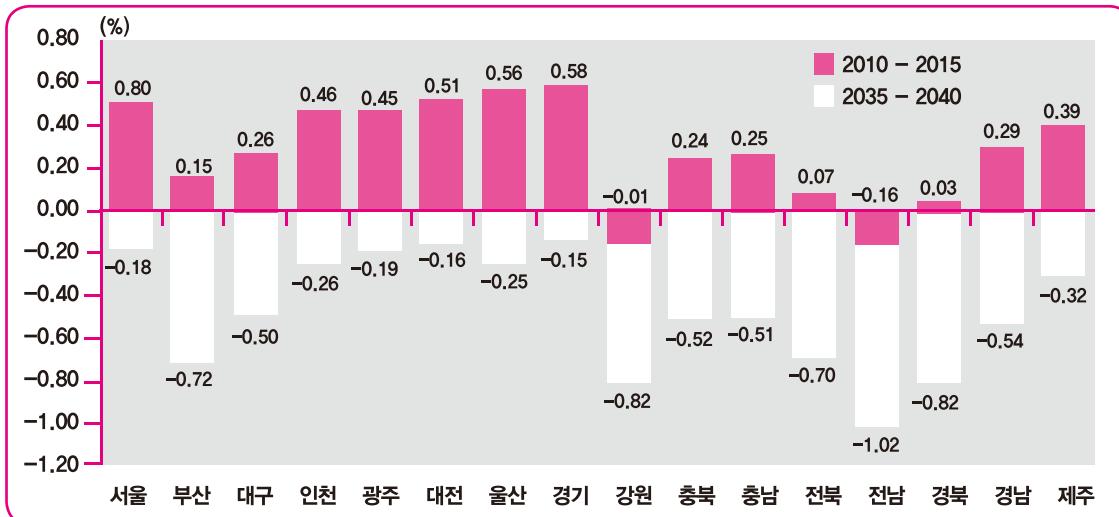
- 지역별 인구변화와 수요 감안 문화기반시설 조성 추진
- 지역문화기반시설 균형적 확충
- 지역문화기반시설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 2-1- 1 지역별 인구변화와 수요 감안한 문화기반시설 조성 추진

##### ○ 지역별 문화지형도, 문화기상도 마련

- 지역별 인구변화\* 추계 등을 기반으로 시설 현황 및 수요 예측
    - 다층적·효율적 분석을 위해 읍·면·동 단위로 분석대상 설정
  - 문화지형도, 문화기상도를 작성, 면밀한 검토 후 시설 건립 추진
- \* 시·도별 장래 인구변화 추계, 시·도별 인구성장률, 고령화 비율, 이주 외국인의 비율, 도시화 비율 등

〈시도별 연평균 자연증가율, 2010–2015 및 2035–2040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 2010 – 2040)〉



-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기반 시설 등 조성

- 어린이 전용 아트센터, 청소년, 여성 및 가족 문화시설, 다문화센터 등

- 2010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545만명(인구의 11.0%)이나 2030년 1,269만명(24.3%)으로 두배 이상 증가, 2040년 1,650만명(32.3%)에 이를 전망
  - 베이비부머가 65세 이상 고령인구에 진입하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고령인구 비중이 전국적으로 8.6% 가량 급증
- 2016년 고령인구가 유소년 인구 추월, 2020년 고령화 사회 진입
  - 유소년인구 1백명당 고령인구를 의미하는 노령화지수는 2010년 68.4명에서 2017년 104.1명으로 유소년인구보다 고령인구가 더 많아지고, 2040년에는 288.6명으로 노인 3명당 유소년 1명꼴



## 2-1- 2] 지역문화기반 시설의 균형적 확충

- 도시화 등에 따른 지역문화기반 시설의 균형적 확충
  - 도시규모, 지역단체, 인구 등 기준으로 지역별 시설의 수, 종류, 규모에 대한 정책 가이드라인 마련
  -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등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문화기반시설 확충 지원
    - \* 한국의 도시화율 심화(2025년 86.3%), 도시를 중심으로 공간 네트워크화 형성
    - \* 2011년 현재 메가시티는 23개, 반면 2025년에는 37개 예측
  - 중소형·접근성 높은 복합문화공간형태의 문화기반시설 확충
- 지역문화기반시설의 기능 중심 리모델링 지원
  - 시설 활용도, 운영현황 조사 ⇨ 리모델링·프로그램 수요 등 분석
    - \* 지역문화전문가로 TF 구성, 지역시설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 전문가 중심 '문화시설재생위원회' 구성, 컨설팅 지원
    - \* 지역문화협력위원회 분과위원회로 구성(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2조)
  - 시설, 역할 및 기능의 리모델링 방안 강구
  - 유연하고 창조적 공간 활용 추진
    - \* 농산물시장+예술공간(시드니 캐리지 월스와 에블레이 마켓)
    - \* 무한상상실 : 공공도서관 유휴 공간을 도서관 이용자(지역주민)가 직접 참여하여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 (미래부 협업)

### 【문화기반시설 주요 문제점 및 개선 방향】

구분	이용률 ('14)	개소수	문제점	개선방향
문예회관	6.6%	220	노후화, 활용 부진	지역 맞춤형 리노베이션 추진
등록박물관	16.6%	754	난립, 콘텐츠 부족	연계 협력형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국공립도서관	10.4%	886	인력부족	인력 확충
작은도서관	-	4,686	인력·장서·프로그램 부족	인력 확충(책친구 등), 독서 연계 프로그램 개발
문화원·문화의 집	1% 내외	229 · 116	폐쇄성, 이용도 부진	생활문화센터 연계, 동호회 공간 등으로 재정비, 시설별 특성화 (문화원 → 향토자료관 등)

(출처: 2014년 문화향수실태조사)

## 2-1- 3 지역문화시설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 지역문화기반시설 활성화 계획 수립
  - 문화기반시설의 활용도 및 운영성과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기반
- 공연장-공연예술단체를 연계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 공연예술단체와 공연장의 연계 및 공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 \* 상주가 어려운 공연장의 경우, 외부단체와의 비상주 장기 공동 프로젝트 운영
  - 단체 간 우수 프로그램 교류 지원(순회공연 방식)
- 지방 문예회관 활용, 민간 우수공연 초청 및 자체 기획공연 운영 지원
  - 문화예술회관 및 인근시설에 국립예술단체 우수 공연 레퍼토리 파견
    - \* 매년 240여개 기관 지원

지원유형	지원대상	지원자격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지원	• 전국 문예회관	
문예회관 기획 프로그램 지원	• 전국 문예회관	공연법 제8조 (공연장의 등록 등)에 의한 등록공연장 ※ 서울 지역 문예회관 제외
국립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지원	• 재정자립도 40% 이하 지역 문예회관	
문예회관과 국립예술단체 공동제작 지원	• 전국 문예회관	
문화가 있는 날 특별프로그램 지원	• 전국 문예회관	

- 지역영상미디어 센터 활용, 문화프로그램 개발·보급 확대
  - 미디어 교육, 영상콘텐츠 지원, 소외계층 미디어 활동 지원, 지역문화시설 연계사업 등 추진
    - \* 전국 33개소 운영, 1개소 기준 10억원 내외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도서관·박물관의 운영 활성화
  -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이 단일 회원증으로 지역 내 모든 도서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책이음 서비스' 확대
  - 국·공립 도서관·박물관 야간개장 활성화 및 야간개장 연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추진



## 2-2 지역의 문화접근성 향상

### ◆ 필요성

- 지역별 격차에 따른 문화향유 혜택의 불균형 시정

### ◆ 추진방향

- 지역별, 계층별 문화격차 해소
- 문화접근성 향상으로 문화향유 및 문화복지 불균형 해소

### ◆ 사업내용

-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확대
- 문화소외계층 프로그램 확대

### 2-2- 1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확대

#### ○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을 위한 기준 마련 및 실태조사
- 재정자립도·문화역량 등 고려, 차등보조율 적용 추진
- 공모사업 추진 시 문화취약지역에 대한 가산점 부여

#### ○ '작은 영화관' 등 맞춤형 지역문화서비스 제공

\* 작은 영화관 : 문화향유가 쉽지 않은 지역을 직접 찾아가 영화를 상영함으로서 대중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

#### ○ 취약지역에 대해 문화프로그램 및 문화예술교육 지원 확대

-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 확대
- 국립 예술단체, 우수 민간단체 취약 지역 문예회관 공연 확대
  - \* 재정자립도 40% 미만 지역 중심
- 지역 문화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실시
  - \* 청소년 쉼터, 자활 공동체, 노숙인 쉼터 등

- 
-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상시 프로그램 운영
    - 예술교육 특화형 체험버스 운영 및 예술교육 장르 다양화
    - 지속적인 체험활동을 위한 ‘예술정거장 정기 순환선’을 개발·운영
      - \* (예) 특정 월 혹은 특정 요일에 약속된 지역을 방문, 1년 동안 동일 지역을 2~4차례 정도 거치도록 노선 설계

## 2-2- 2 문화소외 계층에 대한 문화프로그램 확대

### 〈 문화소외계층 유형 〉

- 경제적 소외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임대주택거주자 등
- 사회적 소외계층 : 군인,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등 교정시설 수용자, 노인, 장애인, 노숙자, 재활원, 보육원 등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노동자 등
- 지리적 소외계층 : 농어촌, 도서(섬), 산간벽지 및 공단지역 주민 등

-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무지개다리사업’ 지원
  - 연령, 직업, 이주민, 장애, 농산어촌 등을 대표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문화 교류와 소통
- 지역 어르신 사회참여 프로그램 확대
  - 문화교육 수혜자에서 지역문화 전승자로 육성하고, 여가 기회 증진 외 일자리 창출에 기여
    - \* (1단계) 어르신 문화학교 → (2단계) 문화나눔 봉사단 → (3단계) 사회적 기업화
- 지역 문화소외계층 공연 활성화 지원
  - 실버극단, 실버악단 등 문화소외지역, 문화소외계층 공연 지원
  - 지역문화재단·지방문화원과 연계, 문화가 있는 날 공연 추진
- 맞춤형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운영
  - 재난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피해자 등 대상/미술, 음악, 무용 분야
  - 지역별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하여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확대 추진
    - \*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재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국 200여개 센터 설립·운영 중 (정신보건법 제13조)



## 2-2- 3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참여 활성화 및 지역별 특성화 유도

-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및 정책과 연계한 지역 프로그램 다양화
  - 문화재 및 사적, 박물관 등 지역 문화자원의 무료 또는 할인 개방 확대
  - 지방예술제·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등과 연계 프로그램 개발
- 지역의 민간시설(공방·클럽·서점 등)과 연계한 「문화 Zone」사업 활성화
  - 지역별 문화예술프로그램의 특성화 유도
  - 공동 프로그램의 기획, 시행 및 홍보 지원 등

\* '15년 시범사업(2개 소, 홍대·순천) → '16년 주요 지방 도시로 확산 (4개 소)

## 2-3 지역문화재원 확충 및 다각화

- ◆ 필요성
  - 지역문화진흥의 토대인 지역문화재원 부족
- ◆ 추진방향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부재원의 확충 방안 추진
  - 문화재정 2% 달성을 방안 마련
  - 지역문화재원 투입의 효용성 증대
- ◆ 사업내용
  - 지역문화 지원방식 개선
  - 중앙과 지방간 협력을 통한 재정 확충 및 체계화
  - 지역문화재원 다각화

## 2-3- 1 중앙정부의 지역문화 지원방식 개선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역협력형 사업 운영 방안 개선
  - 보조사업을 포괄보조 형태로 개편하는 등 추진방식 지속 개선
  - 지역문화브랜드 사업 등 역량 강화사업에 일정 비율 배분 추진

---

### ○ 지방 이양사업의 평가 및 개선

- 지역 이양사업을 전달 체계형에서 지자체 자율형 사업으로 개편
- 이양사업의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 ○ 예산지원 방식의 개선

- 단위사업별 지원에서 관련사업의 통합추진이 가능하도록 개선
- 각 부처 문화관련 사업의 연계·통합 추진 시스템 구축
- 지역의 재정자립도와 지역발전주기에 따른 매칭 비율 차등화

## 2-3- 2 중앙과 지방간 협력을 통한 재정 확충 및 체계화

### ○ 문화관련 제한적 포괄 지역정책 추진제도 마련

- 장기적으로 (가칭) '지역문화진흥특별법' 신설 추진

### ○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지원

- 기금 조성을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 방안 수립 추진
-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별 출연 추진

### ○ 지역과 중앙의 역할 분담 및 효율화

- 중앙의 문화기본권 보장 및 선도, 지역의 문화정책 개발과 추진으로 역할 분담을 위한 자치권 (정책, 역량, 인력, 재원) 확보
- 지역문화 추진 체계 정비를 위한 기반 마련

## 2-3- 3 지역문화재원 다각화

### ○ 재원 확충 사례 발굴 확산 및 제도 개선

- 지역문화사업 공동개최 등 다양한 형태의 민간 재원 투입 유도
- 커뮤니티 아트 비즈니스와 연계한 <커뮤니티 아트 펀드> 개발
- 지역문화 크라우드 펀딩 프로그램 개발

### ○ 지역문화 기업메세나 활성화

- 지역 기업과 단체 간 매칭지원 및 세제 혜택 등 제도 개선 추진



- 중앙정부와 기초 지자체, 민간기업의 협업 구도(상호협력계약 체결)
- 지역특성화 매칭 펀드 지원 사업 추진

○ 문화기부 활성화

- 민간기부, 공간기부, 시간기부 등 다양한 기부방안 추진
  - 문화시설의 입장료 대신 방문객 기부금 모집 시범사업 추진
- 기부 절차 간소화, 세제 지원 방안 강구, 문화기부 캠페인
- 문화기부 포털 구축, 기부백서(기부자 명단 등) 발간, 사용내역 투명성 제고 공개 등

### 3 지역문화 발굴 창조

- 지역문화자원의 발견 및 창조를 통해 지역문화의 고유성, 다양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
- 고유한 지역문화자원을 발굴하여 품격 있는 지역문화의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3-1 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 ◆ 필요성

- 지역고유의 전통유산과 문화자원의 발굴
- 지역문화의 고유성, 다양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

##### ◆ 추진방향

- 지역문화유산의 활용을 통한 지역문화가치 고양
- 지역문화유산의 미래지향적 활용으로 경쟁력 제고

##### ◆ 사업내용

- 지역문화루트 개발
- 근·현대 역사문화공간 및 유휴 공간 창조적 재생
- 지역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 활용
- 마을별 전통놀이 등 문화 자원 복원 및 확산

#### 3-1- 1 지역문화루트 개발(면, 점→선)

- 근·현대 산업유산 문화루트 개발
  - 근·현대 산업시설 유휴공간을 문화·관광형 시설로 활용
  - 주요 산업시설을 연결, 테마루트 구축(ex :조선, 철강, 방직, 광산 등)
  - 지역공동체 통합, 문화예술가 네트워크 구축, 시민 참여 문화예술활동 증진 등 다양한 문화프로젝트 추진
- \* 예)유럽산업문화루트, 독일루르공업지역산업문화 루트, EC문화루트
- 지역과 역사를 연결하는 “역사 문화길” 조성
  - 강이나 도로 또는 역사가 연결되는 역사 문화길을 조성



- 지역의 다양한 역사문화·생활문화를 연결, 관광자원화 추진
  - \* 예시) 경부문화길, 중원문화길, 서남해도서길, 백마강문화길
  - \* 중국: 실크로드, 차마고도 등 옛 길과 주변 역사문화자원을 문화경로(Cultural Route)로 복원. 또한 대운하(횡하강, 양자강 등) 주변의 8개 도시 역사 문화축을 조성하여,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을 추진

### 3-1- ② 근·현대 역사문화공간 및 유휴 공간의 창조적 재생

- 근·현대 역사문화공간의 재해석을 통한 '지역문화융성센터' 조성
  - 지역별로 근·현대 역사문화지도를 작성
  - 유휴시설을 지역별 문화자산과 연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생
    - \* 대구예술창작발전소, 인천 아트플랫폼, 청주 연초제조창, 도청 이전건물 등
- '원도심'의 문화적 재생을 통한 지역가치 향상
  - 문화도시·문화마을 사업, 지역문화컨설팅 사업, 공공미술프로젝트 등 추진(국토교통부\*와 협력)
    -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3.12.31 공포)에 따라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해 도시재생사업 추진

#### 【외국사례 : 런던 밀레니엄 프로젝트】

- 21세기를 맞아 런던의 낙후된 지역을 거점으로 도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된 대형 문화예술 프로젝트 시행



〈밀레니엄 돔(Dome)〉



〈밀레니엄 브릿지〉



〈밀레니엄 빌리지〉



〈런던아이〉

---

### 3-1- 3 지역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 활용 확대

- 한식, 한옥 등을 활용한 한문화(K-Culture) 3.0 사업 추진
  - 문화예술, 창조산업, 환경 및 생태, 역사문화, 자연유산 등 유형별, 테마별 선도 브랜드 개발
  - 지역 한문화 콘텐츠와 스토리를 개발하여 테마별로 한류문화길(K-Road) 브랜드 개발
  - 국내외 제작·유통 판로 확충 및 사업모델 개발
  - 고택·유적지 등 전통 공간을 한복·한식 등과 연계, 복합모델 개발
    - \* 전주 한옥마을 한복데이, 안동 고택 한식체험프로그램 등
- 나루터·포구 등 수변문화 및 해양문화 활성화
  - 전통적 나루터·포구·내수면문화 복원으로 체험형 문화공간 발굴·조성
    - \* 어시장 시범 조성, 소규모 소비자 대상 수산물 경매 등
  - 나루터, 포구 등과 연계한 수변문화 루트 조성 및 해양문화 전승
- 문화유산의 공간 계획적 연계
  - 문화유산, 전통공연장, 무형문화재 작품 공간, 소형 극장 등을 연계
  - 지역 특화 창작극, 뮤지컬 등을 지역의 공연 상품화
- 매장문화재 등 문화유산의 적극적 활용
  - 매장문화재를 보존·전시하여 지역의 역사성·고유성 회복
  - 지역 역사 및 생활문화를 연구·교육과 관광자원으로 활용

### 3-1- 4 마을별 전통놀이 등 문화 자원 복원 및 활용

- 세시풍속의 지역문화 자원화
  - 절기별 세시 풍속을 지키는 마을 선정 및 관광자원화('15년 시범사업 추진)
  - 주요 세시 풍속 전래 마을에 대한 통합적 정보 제공 및 홍보
- 전통축제 및 공동체 놀이 문화의 복원·전승
  - 마을별 전통축제 실태조사 및 복원·전승 지원
  - 지역 고유의 전통놀이문화를 발굴·복원하여 지역의 문화 자산으로 활용



### ○ 전통문화체험교육의 운영 활성화

- 忠, 孝, 禮를 기반으로 전통 인사법·의복예절·다도예절 등 체험
- 향교, 서당 등 지역 단체와 연계, 관광자원으로 활용

### ○ 전통지식자원의 발굴 및 활용

- 민속어휘, 민간의료, 전통생활지식·기술 등 전통지식자원 발굴
- 전통지식자원의 아카이브 구축과 연구·전시
- 이야기 할머니, 전통지식 강사 양성 및 인성교육 놀이체험 프로그램 개발

## 3-2 지역문화 가치발굴

### ◆ 필요성

- 품격 있는 지역문화를 위한 가치 창출
- 가치 있는 지역문화자원의 발굴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함

### ◆ 추진방향

- 지역문화자원의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및 발굴을 통한 지역가치 정립
- 역문화자원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인식과 지역 자긍심 제고

### ◆ 사업내용

- 문화자원의 발굴·개발·활용 체계 구축
- 지역 생활문화자원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
- 지역별 특화된 콘텐츠기반 마련

## 3-2- 1 문화자원의 발굴·개발·활용을 위한 체계 구축

### ○ 지역문화자원 정보 수집 및 공유시스템 구축

- 지역의 전통자원, 문화유산, 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문화자원, 문화인력 등의 아카이브 구축
  - 지역문화자원의 분석과 매핑, 분포도 파악
  - 지자체별 구축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연계, 이용자 정보 제공
- \* '16년도 기초 연구 및 기본계획 수립, '17년도 시스템 구축 추진

## ○ 지역문화 다양성 지도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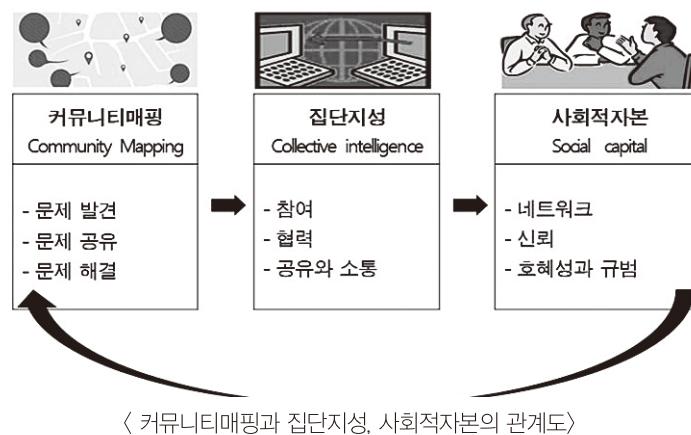
- 지역 현황, 지역 문화자산 등 지역별 다양한 문화지도 작성
  - \* 양적 문화지도 (지역사회 유형의 문화자원 지도, 무형의 문화정체성 지도) 뿐만 아니라 질적 문화지도(지역상징지도, 문화집단군 지도, 문화접근지도 등) 작성
- 지역과 지역주민들의 정서와 장소감에 대한 주기적 조사
  - 지역문화재단, 지방문화원, 지역대학 등 중심

## ○ 지역문화 커뮤니티 맵핑 인프라 조성

-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지역 정보 수집, 생활지도 작성
- 인터넷·스마트폰으로 공유, 지역문화공동체 형성의 계기로 활용
- 지역 문화자원의 효율적 발굴·분석·활용 가능
- 커뮤니티 맵핑(Community Mapping)을 통해 주민들의 지역문화 참여 기회 확대

\* 사례 : Street H(홍대), 동네 도서관 지도(성미산마을)

기획→오리엔테이션→네트워크 구축→현장조사→결과 공유



## ○ 향토문화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 전통지식 및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원천자료 보관·제공·활용 지원
  - \* '16년도 향토문화자료관 건립 추진('14.8.20 한국문화원연합회와 세종시 MOU체결)
- 지역별 향토문화자료의 전시, 열람, 연구, 체험 등 통합서비스체계 마련
  - \* 문화부 문화원형 발굴, 교육부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사업, 지방문화원 소장 자료 등과 연계



#### ※ 지방문화원 향토문화자료 소장 현황

구 분	도서	이미지	영상	음성	채록물	기타	총계
건 수	1,167,354	351,952	51,859	14,979	3,296	8,933	1,598,373

(2011 종합경영조사서, 한국문화원연합회)

### 3-2- ② 지역 생활문화자원의 체계적 개발 및 활용

#### ○ 지역문화아카이브 공간 조성

- 소규모 유휴시설을 활용, 지역문화 전시·판매·교육 공간으로 조성

\* 장수 마을 박물관(서울시 지원, 마을공동체 운영) : 지역민의 이야기와 지역 역사를 아카이브화 하고 전시할 수 있는 마을박물관을 조성, 지역 주민이 직접 만드는 장명루(오색실로 짜는 팔찌)와 나무 목걸이 등 생태공예 전시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수익창출이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

#### ○ 기초단위 생활권별 지역문화산업 육성

- 지역특화 이야기(사건, 인물, 신화, 전설, 민담, 일화 등)를 소재로 하는 예술 융합작품 공모 및 공연 지원 등

### 3-2- ③ 지역별 특화된 문화 콘텐츠사업 기반 마련

#### ○ 지역별 문화 콘텐츠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

- 지역의 다양한 역사, 생활 등을 조사하여 스토리텔링 및 아카이브 구축
- 지역 콘텐츠 발굴 가이드라인 배포, 선정기준 마련 및 교육
- 문화자원 스토리텔링 활성화 중장기 계획 수립, 스토리텔링 원천 자료 개발·보급 및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 ○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개발(Historytelling) 및 육성

- 전통문화·설화·유적 등 지역별 특화소재를 문화콘텐츠로 개발, 해외 마켓 참가 지원 등 글로벌 콘텐츠로 육성
  - 지역 역사에 기반을 둔 스토리텔링을 위한 Historyteller 양성
- 콘텐츠 제작인프라 고도화, 광역단위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지원
- 콘텐츠 스페이스 시설 구축 및 콘텐츠 체험프로그램 운영

---

### ○ 지역문화 공공콘텐츠 활용 시범사업 추진

- 국·공립박물관 등 지역의 공공기관 및 문화시설 보유 문화콘텐츠 활용,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등 강화

\* EU는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하여 공공콘텐츠 중심 아카이브 사업 진행 중 (INFO2000 프로그램('96~'99), eContent 프로그램('01~'04), eContentPlus('05~'08) 프로그램)

### ○ 지역문화관련 문화예술기업 육성 및 지원

- 지역 문화상품 개발, 상품 리모델링 컨설팅, 홍보, 기획, 마케팅 지원
- 한국형 지역 맞춤형 사회적 예술기업 모델 개발 및 육성
- 문화콘텐츠 및 산업과의 연계협력 사업 지원
- 예술·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 경영컨설팅 강화 및 금융지원(융자, 보증 등) 추진
- 맞춤형 전문 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역량 및 경쟁력 제고

\* 전통담장개선 등 지역 역사·문화 환경 조성 관련 마을기업의 육성

### ○ 장소성에 기반을 둔 지역 문화산업 육성

- 지역문화산업의 핵심 가치를 장소성에 두고 지역문화의 창조적 활용 추진.



### 3-3 지역문화브랜드 세계화

#### ◆ 필요성

- 지역문화자원의 미래가치 창출을 통한 일자리, 문화산업, 지역경제 활성화
- 세계적인 지역문화 상품의 발굴 및 육성

#### ◆ 추진방향

- 지역문화유산, 지역문화원형 등 다양한 유형의 지역문화콘텐츠 발굴
- 지역 고유의 문화브랜드 정립을 위한 마케팅 방안
- 선도사업의 개발 (장소성, 생활권, 문화권 중심)

#### ◆ 사업내용

- 국토 및 지역문화 브랜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 지역문화특화사업 추진
- 문화도시 지정 및 확대
- 문화지구 지정 및 육성
- 지역문화브랜드 선정 및 확산

### 3-3- ① 국토 및 지역문화 브랜드의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

#### ○ 국토 및 지역브랜드 계획 수립 추진

- 국토종합계획, 광역단위종합계획 수립 시 지역문화 특화사업 및 지역문화 브랜드를 고려한 계획 수립
- 지역문화 브랜드 개발,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정책 설계, 지역문화 평가 환류체계 등 수립

〈국토 및 지역문화브랜드 체계〉

단위	지역문화 특화사업 및 브랜드
기초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마을, 창조마을</li> <li>- 문화특화지역</li> </ul>
광역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도시 브랜드</li> <li>- 창조도시 브랜드</li> </ul>
광역권(지자체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문화권역 브랜드</li> <li>- 문화도시(혁신도시) 네트워크 브랜드</li> </ul>
글로벌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문화중심도시 브랜드</li> <li>- 동아시아 문화도시 브랜드</li> </ul>

- 
- 지자체간 문화브랜드사업 연계를 위한 컨설팅 지원
    - 지자체간의 공동브랜딩 사업 지원을 통해 경쟁력 제고
      - \* 사례) 아리랑 등 무형문화유산, 역사인물 브랜드화 사업, 경기지역 도자기 축제 등 다수 지자체간 연계 문화브랜드 사업
  - 우수 지역문화 프로그램 교류 활성화
    - 지역재단 등 문화단체 간 우수 지역문화 프로그램 교류 촉진
    - 지역별 대표 브랜드 공연 등 교류 지원

### 3-3- 2 지역문화 특화사업 추진

- 문화도시·문화마을 사업 지원
  - 지역의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고유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사업 위주로 지원
  - 도시는 매년 7.5억원을 5년간, 마을은 매년 2억원을 3년간 지원
    - \* '14년도 문화도시 1개소, 문화마을 2개소 → '15년도 문화도시 7개소, 문화마을 13개소
    - \* 지역발전특별회계(문화시설확충 및 운영) 예산: 국비 40%, 지방비 60%
  -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연계 추진

#### 국토부+문체부 협력 사례

- (군산) 국토부 균린재생형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근대건축물 정비, 주거재생, 경관정비, 하버파크 조성 등/국비 100억) + 문체부 문화도시사업(문화예술프로그램 체험 등 시민예술촌 운영/37.5억원)
- (청주) 국토부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사업(국비 250억)
  - + 문체부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국비 5억), '16 문화도시 사업(37.5억)

- 문화예술 전문가, 현장관계자가 참여하는 컨설팅팀 구성,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등 종합 컨설팅 지원
- 성과가 우수한 문화도시에 대해 문화도시 지정(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 지역특화 문화행사 지원 확대
  - 지역의 독특한 역사·문화 지원을 활용한 행사개최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문화 향수권 신장 및 지역문화 활성화
    - \* '14년도 강릉단오제 등 9개 사업(지특회계) → '15년도 14개 사업 지원



### 3-3- ③ 문화도시 지정 및 확산

- 문화도시의 지정(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야별로 문화도시 지정
- 문화도시의 지정 및 활성화 방안 강구

구분	경주 역사문화도시			전주 전통문화도시			공주 · 부여 역사문화도시		
비전	천년의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			세계와 소통하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			역사를 재현하는 부여 문화를 창조하는 공주		
기간	2006~2035(30년)			2007~2026(20년)			2009~2030(22년)		
예산	3조 3,533억원	국 비 1조7,662억(53%)	1조 7,109억원	국 비 4,112억(24%)	1조 9,333억(55%)	1조 3,564억(21%)	국 비 4,001억(32%)	지방비 5,019억(40%)	민자 3,557억(28%)
	지방비 1조1,799억(35%)	민자 4,072억(12%)							
사업 내용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계승,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 생활환경 개선 등(65개 사업)			한식 · 한옥 · 한지 · 판소리 등 전통문화자원 보존 · 계승 · 활용,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65개 사업)			백제왕도 골격의 체계적 회복과 재생, 역사문화자원의 창조적 활용과 지원화(57개 사업)		

- 문화도시심의위원회 구성으로 추진체계 마련('15.7월)

\* 문화도시 지정, 운영방식, 성과 평가 등에 대한 의견수렴 및 심의 수행

-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통해 사업의 성과 확대

-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문화 창조도시 조성

\* 유네스코 창의도시 : 문학·음악·민속공예·디자인·영화·미디어·음식 등 7개 분야 : 한국 5개 도시(서울, 전주, 이천, 광주, 부산)

-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지원 연계 추진

- 매년 한중일 3개국에서 도시를 선정하여 교류('14년 광주, '15년 청주)

\* '15년 한·중·일 동아시아 문화도시 기금조성 및 네트워크 결성 추진

- 문화도시·문화마을사업과 연계 추진
- 장기적으로 아시아 문화도시 교류 사업으로 육성

---

### 3-3- 4 문화지구 운영제도 개선 및 활성화

- 문화지구 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등 제도 개선
  - 문화지구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 관리체계 내실화
  - 부적합 업종 및 업태, 행위 등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
  - 기타 옥외광고물 관리 등 법령 정비를 통해 문화지구 운영 내실화
- 문화지구 특성을 강화하는 『문화지구 특성화 사업』추진
  - 각 문화지구별로 지역자체를 특성화하는 종합발전계획 수립
    - \* 문화지구 : 인사동, 대학로, 파주 해이리, 인천개항장, 서귀포
  - 지역 문화시설, 문화시설 벨트(정동문화벨트) 등과 연계
- 문화지구 사업 지원 및 확대
  - 문화지구에 대한 집행상황 평가(매3년), 우수 지구에 대한 지원
  - 특화된 문화지역 보전을 위해 문화지구 지정 확대

### 3-3- 5 지역문화브랜드 선정 및 확산

- 지역별 특성을 살린 지역스타일 창조
  - 전통적 문화자원, 근·현대 문화자원 등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발굴
- 우수 지역문화브랜드 발굴 및 육성
  - 지역대표브랜드를 선정, 지역문화 발전 모델 확산
  - 사업비, 홍보 및 마케팅 지원



#### 〈 지역문화브랜드 선정 결과 〉

- ◆ '12년 : 성남 사랑방문화클럽, 부산 감천문화마을
- ◆ '13년 : 대구 중구 근대골목, 광주 북구 시화마을
- ◆ '14년 :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 청주연초제조창 공예비, 서귀포 유토피아로

#### ○ 지역문화브랜드 구축 및 확산 지원

- 지역브랜드와 지역생산품브랜드 매뉴얼 제작·보급
- 지역문화 생태학습장 조성, 문화기획자 등에게 학습 기회 제공

#### ○ 지역문화브랜드 세계화 추진

- 지역문화협력위원회에 지역문화브랜드분과위원회 구성('15.하반기)
- 지역문화브랜드 발전 단계별 체계적 지원 추진

\* ex)브랜드 발굴→지역문화브랜드화→문화도시(마을)→동아시아문화도시

### III. 추진 체계

#### ■ 지역문화관련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지역문화 부처협의체 구성(문체부, 행자부, 국토부, 농식품부 등)

\* 지역문화협력위원회와 연계, 지역문화 행정분과위원회 구성(시행령 제 22조 제8항)

- 지역문화사업 범부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행정정보 및 지역 상호 간 정보 공유와 공동협력 추진

- 문화행정 기능 강화 및 연계 협력

– 지역문화와 복지, 환경, 교육, 지역, 예술 영역의 지역 네트워크 협력

– 지역 내 지역문화기관 상호 간 연계·협력시스템 구축

#### 〈사회공헌 5대 영역 지역문화네트워크 정책〉

사회공헌 5대 영역	지역문화네트워크 정책
복지	장애인 · 어린이 · 노인 · 여성 · 다문화 '문화복지 지역네트워크 사업'
환경	지구환경, 지역환경 살리기 '문화생태 지역네트워크 사업'
교육	소외계층 · 문화취약계층 '문화교육 지역네트워크사업'
지역	소외지역 · 문화취약지역 재생 '문화공동체 지역네트워크 사업'
예술	예술인복지, 지역예술보존 '문화예술 지역네트워크 사업'

#### ■ 효율적 지역문화정책 수립·집행체계

- 지역문화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체계적 평가

– 지역중심 정책 및 사업평가 체계 도입과 환류체계 구성

• 양적 지표를 질적 지표로,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평가

– 지역문화사업의 이력관리제 실시, 고유의 평가체계 개발, 중장기 사업계획과 이행실적 관리

- 상향식 전달체계(기초→광역→중앙) 구축

– 지역의 행정·문화기관·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문화 거버넌스 구성



- 지역문화의 정책주체 간 역할 분담 및 협력 강화
  - (중앙부처)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통한 정책비전 수립, 정책추진의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 제시
  - (지자체) 지역특성과 여건을 반영하는 시행계획을 통해 지역문화정책 및 사업 추진
  - (지원기관 및 단체) 문화행정주체(정부 및 지자체)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 구축, 자문 및 지원

### ■ 지역문화진흥원 설립·운영

- 지역주민의 문화향유와 문화복지 서비스 총괄 지원
  - \* 현재 지역문화관련사업이 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예디자인진흥원 등 분산 추진 중
- 지역문화정책 추진 지원 및 평가·분석 기능
  - 정보 수집·분석과 자료 제공,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지역문화 관련 DB 및 네트워크 구축·운영
  - 지역 문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와 환류
- ‘국가문화인적자원센터’ 기능 수행
  - 지역문화인력 인증 및 등록제도 등 관리체계 구축 운영
  - 지역문화인력 양성사업 총괄 및 문화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등

### ■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구성·운영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수립 지원
  -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등 주요계획 및 정책의 수립 자문
  - 지역문화정책관련 중요 사안의 조정과 심의
- 지역문화 정책 수립 및 추진 네트워크 역할
  - 지역의 문화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공유 및 협의 창구 역할
  - 부처 간 협력 등 지역문화 정책네트워크 구성·운영

## IV. 과제별 추진(관계)기관

추 진 과 제	추 진(관계) 기 관
<b>과제 1. 지역문화 역량 강화</b>	
1-1.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1-1-1.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문체부, 교육부
1-1-2. 지역문화전문인력 현업증사 지원	문체부, 지자체
1-1-3. 지역문화전문인력 종합인적자원 관리체계 마련	문체부
1-2. 생활문화 진흥	
1-2-1. 생활문화 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문체부
1-2-2. 생활문화공동체 형성 및 활동지원	문체부, 지자체
1-2-3.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	문체부, 행자부, 지자체
1-3.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1-3-1. 지역문화관련 법·제도의 정비	문체부, 지자체
1-3-2. 지역문화 기초현황 조사 및 지표 개발	문체부, 지자체
1-3-3. 도시 및 지역의 통합적 문화계획 수립	문체부, 국토부, 지자체
1-3-4.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역문화 사업 지원	문체부, 지자체
<b>과제 2. 지역문화 격차 해소</b>	
2-1. 맞춤형 문화기반 조성	
2-1-1. 수요맞춤형 문화기반시설 조성	문체부, 지자체
2-1-2. 지역문화기반 시설 균형적 확충	문체부, 지자체
2-1-3. 지역문화시설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문체부, 지자체
2-2. 지역의 문화접근성 향상	
2-2-1.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확대	문체부, 지자체
2-2-2.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프로그램 확대	문체부, 지자체
2-3. 지역문화재원 확충 및 다각화	
2-3-1. 지역문화 지원방식 개선	문체부, 지자체
2-3-2. 협력을 통한 재정확충 및 체계화	문체부, 기재부, 지자체
2-3-3. 지역문화재원 다각화	문체부, 기재부, 지자체



추 진 과 제	추 진(관계) 기 관
<b>과제 3. 지역문화 발굴 창조</b>	
<b>3-1. 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b>	
3-1-1. 지역문화루트 개발	문체부, 지자체
3-1-2. 근현대 역사문화공간 및 유휴공간 창조적 재생	문체부, 국토부, 문화재청, 지자체
3-1-3. 지역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 활용 확대	문체부, 문화재청, 지자체
3-1-4. 마을별 전통놀이문화 복원 및 확산	문체부, 농식품부, 지자체
<b>3-2. 지역가치 발굴</b>	
3-2-1. 문화자원의 발굴 · 개발 · 활용	문체부, 지자체
3-2-2. 지역 생활문화자원의 체계적 개발 및 활용	문체부, 행자부, 지자체
3-2-3. 지역별 특화된 콘텐츠사업 기반 마련	문체부, 지자체
<b>3-3. 지역문화브랜드 정립</b>	
3-2-1. 국토 및 지역문화브랜드의 통합 지원체계 구축	문체부, 국토부, 지자체
3-2-2. 지역문화 특화사업 추진	문체부, 행자부, 농식품부, 국토부, 지자체
3-2-3. 문화도시의 지정 및 확대	문체부, 국토부, 지자체
3-2-4. 문화지구 운영제도 개선 및 활성화	문체부, 국토부, 지자체
3-2-6. 지역문화브랜드 대상 선정 및 확산	문체부, 지자체



## 제주문화예술정책연구 제14집

---

발행일 2015. 12.

발행인 현승환

발행 편집 (재)제주문화예술재단 기획팀

63196 제주시 동광로 51(구, 이도1동 1244-4)

제주문화예술재단

Tel. (064)800-9113, Fax. (064)800-9139

[www.jcaf.or.kr](http://www.jcaf.or.kr)

인쇄처 하나출판

---

비매품

※ 이 책의 내용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공식적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수록된 내용을 전재하거나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주문화예술재단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